

2017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하재

2017년도 한국국토정보공사 ○○ 종합감사 결과보고

2017. 3.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1
3. 감사 중점사항.....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2
1. 조직 및 인력.....	2
2. 2017년 업무추진 실적.....	3
3. 2016년 업무추진 실적.....	3
4. 2016년 경영성과.....	3
III. 감사결과.....	4
1. 총 평.....	4
2. 지적사항 총괄.....	6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6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8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8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21
V. 기타사항.....	21
1.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	21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21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본사 업무전반에 걸쳐 업무처리의 합법성·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과 오류를 시정하고 예방하여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한국국토정보공사 ○○에 대하여 감사일까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의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인력운영의 적정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한국 국토정보공사로서 새롭게 출범한 공사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 확장된 사업 영역의 내실화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모범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7. 3. 6.부터 같은 해 3. 17.까지 10일간 감사실 9명의 감사인력(연인원 85명), 3. 16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외부회계감사전문가(○○○○ 법인) 2명의 감사인력(연인원 4명) 총 11명의 감사인력(89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이후 감사실의 감사심의조정회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4개 본부(5실, 9처 7부), 감사(1실 2부)

(2017. 1. 1. 현재)



교육원·연구원·지역본부 조직도



○ 지사 현황

합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제주
172	10	7	4	29	15	10	17	12	22	25	19	2

○ 인 력

2017. 2. 28. 현재

구분	계	임원	본부장	국토 정보직	기획 경영직	정보 전문직	법무 국제직	기능직
정원	220	5	-	162	33	10	7	3
현원	215	5	1	154	37	10	5	3

2. 2017년 업무추진 실적

2017. 2. 28. 현재

(단위: 필/백만 원/%)

구분 업무명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855,113	513,300	207,727	68,126	11.2	13.4
지적측량	1,410,588	458,992	196,231	66,192	13.9	14.4
공간정보	326,885	32,426	10,995	1,842	3.4	5.7
지적재조사	117,636	17,882	501	92	0.4	0.5
해외사업	4	4,000	-	-	-	-

3. 2016년 업무추진실적

(단위: 필/백만 원/%)

구분 업무명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945,155	477,400	1,954,540	510,339	100.5	106.9
지적측량	1,298,849	426,299	1,452,627	455,445	111.8	106.8
공간정보	476,416	35,020	406,023	38,329	85.2	109.4
지적재조사	169,884	13,581	95,884	14,069	56.4	103.6
해외사업	6	2,500	6	2,496	100.0	99.8

4. 2016년 경영성과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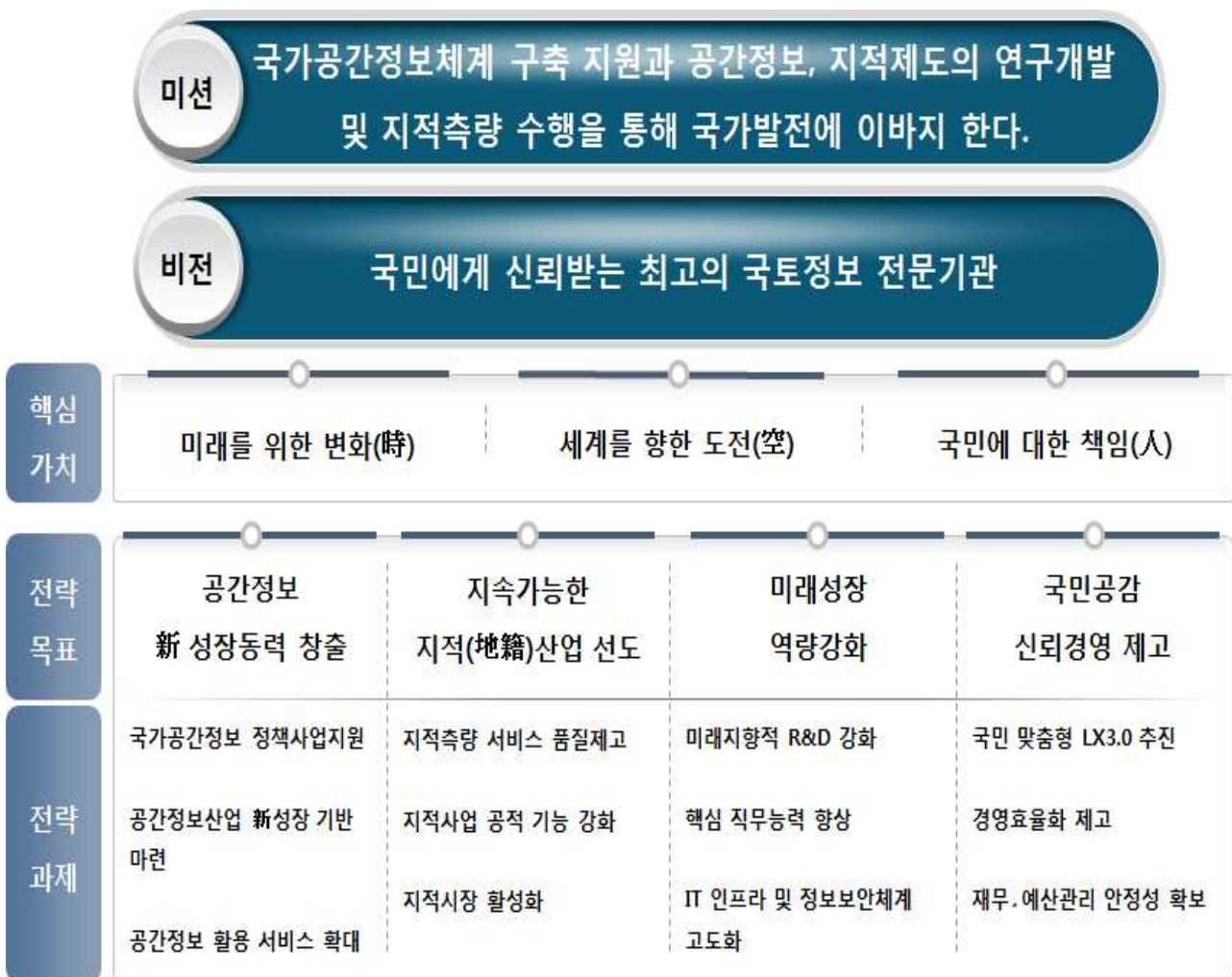
구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신용등급	경영평가
재무성과	507,843	148,154	56.1	AA-	A(우수)

Ⅲ. 감사결과

1. 총 평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개발 및 지적측량 수행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공사 미션 달성을 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3대 핵심가치, 4대 전략목표, 4대 전략방향,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최선의 노력의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사는 2017년 신입 CEO 경영방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공간정보」, 「국가 정책과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공간정보」를 경영핵심 목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공사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써 국가 정책 중점 추진 사항인 공공기관 정상화 기능조정과 세대 간 상생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도 조기도입 등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기관, 기관장) 최고등급(A),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종합청렴도 21개 기관 중 4위(2등급), 공공혁신대상 수상과 함께 정부도 공사의 성과를 인정하였다.

특히 공사 최초 매출액 5천억 원(5078억 원) 초과 달성, 한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대한민국 동반성장 혁신대상, 공공기관 지속지수 종합대상,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LX토지알림e 2015년 App대상과 ○○○○부로부터 기록물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사 최초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등 여러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2017년도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대도약 해로 정하고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지원, 공간정보·지적제도 연구개발, 지적측량 수행, 공간정보 산업진흥 등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공적영역 수행으로 보다 편리한 국토정보 제공함으로써 국민행복과 정부정책의 선제적 수행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종합감사 결과 본사에서는 본사 실시 연구용역 성과물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등 2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의 전반적인 점검과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추진 등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현지 처분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추징	회수	지급	징계	문책 (주의요구)		
건수	24 (9)			11	7		4			2 (10명)	(9)	20
금액	28,353,360 (137,600)						28,353,360				(137,600)	

※ ()는 현지처분임. 신분상 조치는 문책 2건(주의 1명, 주의요구 9명)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가. 연구행정 분야

2017- 7
저분요구서 일련번호

본사 실시 연구용역 성과물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 요약 >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 본사에서 실시한 연구수행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
 - 연구용역의 성과물 손실방지와 활용 확대 및 예산의 중복지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 본사 실시 연구용역 성과물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나. 예산관리 및 계약·회계사무 분야

2017-8 예산집행지침에 관한 사항

< 요약 >

「여비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증빙서류(톨게이트 영수증 등)를 첨부

–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여비 정산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출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개선

2017-12 연구용역 등 검사·검수 처리 소홀

< 요약 >

연구용역 등 검사·검수를 철저히 한 후 준공처리

○ 연구용역 검사·검수 성과품 관리 소홀

– 연구용역 산출물 초안 확인으로 적합 판정 및 최종보고서 산출물을 확인하지 않고 검사·검수 처리

* 연구용역 등의 검사·검수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9호에 따라 “주의요구”

2017-16 에티오피아 사업타당성 용역 검수 부적정

< 요약 >

「계약규정」

○ 에티오피아 사업타당성 검사·검수 소홀

– 계약상대방이 일부과업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검사·검수를 승인하였고 2017. 2. 28.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

* 에티오피아 사업타당성 용역 완료보고서에 순현재가치·내부수익률·비용편익분석·기술적합성·실현 가능성 등이 명시되지 않음(불합격 처리하여야 함)

* 에티오피아 사업타당성 용역 검사·검수를 소홀히 한 국토정보직 6급 ○○○을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책처분(주의)

2017-17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가입비 회수 부적정

< 요약 >

「방글라데시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 「방글라데시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_('F/S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엔지니어링 ○○조합 가입비

- 'F/S 용역' 계약 체결 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을 발급 받고자 한시적으로 납부한 엔지니어링 ○○조합 정조합원 가입비 9,438,180원을 'F/S 용역' 계약 종료 후 또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후속 사업이 연속하여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함.

* 'F/S 용역'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조합 정조합원 가입비 9,438,180원 즉시 회수

2017-18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요약 >

「급여규정」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

○ 개인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특근명령부를 근거로 개인별 초과 근무현황을 확인하여 수당 지급

* 개인별 초과 근무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32명에게 초과근무수당 1,886,130원을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886,130원을 즉시 반납 조치

2017-19 초과근무수당 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

< 요약 >

「급여규정」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

○ 초과근무시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 절차 개선

- 특근명령부 초과근무시간을 수당 계산과 직접 연동시키고, 수당 지급시기를 월말이 아닌 익월 초로 변경
- 월말일자 초과근무시간까지 최대한 반영

* 「예산집행지침」에 명시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일을 당월 말일에서 익월 초로 변경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절차를 개선

2017-29 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요약 >

「계약사무처리규칙」

○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 심의 방안 필요

- 부설기관 및 지역본부에서 본사 ○○○○실장 및 ○○부장 등으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매번 구성하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처리
- ‘원격근무’는 근무유형에 대한 관련지침과 운영매뉴얼과의 상이
- * 계약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본부 및 부설기관에서 수의계약사유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마련

다. 지적(공간)행정 및 고객서비스 분야

2017-10 민원(지적재조사, GPS, 중장기, CS)담당자 휴대폰 사용료 부적정

< 요약 >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요령 개정 및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업무처리의 혼선

- 필수인력(민원, 지적재조사, GPS, 중장기, CS)담당자에게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현장 측량업무종사자에게만 지급 됨)
-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 개정(○○○○실-2851: 2015. 6. 8.)
- *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35조의 불필요한 내용을 개정
- * 민원(지적재조사, GPS, 중장기, CS)담당자 13명에게 지급된 휴대폰 사용료 5,324,910원 회수

2017-11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요약 >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규칙」 및 2015년 인력운영계획(안) 및 직제규정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바로처리센터 콜센터 상담원의 권리 보호 및 부당한 근로 예방

– 상담원 근무수칙 중 연차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연차일의 3일 전까지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등 불평등한 수칙 운영

–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를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 미흡

* 바로처리 콜센터 상담원의 권리 보호 및 부당한 근로 예방을 위해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규칙」 개정

* 콜센터 근무시간: 09:00~18:00(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규칙)

* 관리부서: ○○○○처 ⇒ ○○○○처 변경

2017-13 신규사업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 요약 >

「신규사업 운영지침」

○ 신규사업 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 기준 및 보상금 지급 시기 조정

– 개발된 신규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은 다른 업무(지적재조사, 개방업무, 해외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 등)를 수행하는 기관 및 직원과의 형평성

– 신규사업 업무의 완료시점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의 지급 시기 조정

*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 제도를 형평성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업무의 완료시점에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

2017-14 공사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 요약 >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의 직원 동참 활성화

○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 담당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공사 모든 직원이 능동적으로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 담당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
- *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 업무는 기획부터 홍보부스 제작까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장정의 업무
- *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 담당자 포상이 지난 2년간 없었던 것으로 확인
- * “제3차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

2017-15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 요약 >

글로벌사업처 「중장기 경영목표(2016~2020)」

○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 시장개척을 통해 민간기업과 동반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필요
- * 세미나/간담회 11회 및 해외로드쇼를 2회 개최결과를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음
- * 해외사업 입찰정보, 국제행사, 상담실, 법률/정책 자료 및 진출지원 자료 등의 지속적 갱신과 운영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력하지 않음
- * 국내 공간정보산업체의 해외진출 및 민간기업과 동반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

라. 자산관리 분야

2017- 9 측량장비 검·교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요약 >

「업무규정」 및 「측량장비 검·교정센터 운영지침」

- 측량장비 성능검사 주기 및 자산변동 내역의 효율적 등록·관리
 - ○○○○기구 및 ○○○○○○협회의 기준에 맞도록 측량장비 성능검사 주기(2년)으로 조정 및 성능검사를 위한 대체 장비를 효율적 관리
- * 성능검사 주기 조정 방안 및 대체장비 입·출고(공차)가 발생할 경우 자산변동 내역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ERP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

마. 일반행정 및 복무행정 분야

2017-20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 요약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 現)공사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운영
 -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의 범위 기관”에서 200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17년간 제외
 - 現)공사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대하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등에 부합 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지침 폐지의 필요성
-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대하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등에 부합 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지침 폐지를 검토하여 시행

2017-21 국외출장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요약 >

「국외출장 지침」 및 “국외출장 및 항공마일리지 업무처리요령 2016”

○ 「국외출장지침」 합리적 개선

- 국외출장 시행부서는 국외출장 현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
- 국외출장자는 출장 종료 후 3주 이내에 출장개요, 일정, 활동내용, 습득한 정보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 *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외출장 현황관리대장을 분기별로 제출 하지 않음
- * ○○○○실 또한 분기별로 국외출장 현황관리대장 작성·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 * 2016. 1. 1.부터 현재까지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3주 이내에 11건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등록하지 못함.
- * 공사의 「국외출장 지침」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_대통령령 제27822호」과 같이 국외출장 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 국외출장 현황관리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지연 등록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외출장 지침」을 개정 권고

2017-22 직원 복무(지각, 조퇴)점검 및 관리 부적정

< 요약 >

「복무규정」

○ 직원 복무 점검 및 관리

- 지각 및 조퇴의 연간 합산 누계시간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 지각, 조퇴 횟수 및 출근, 퇴근, 유연근무제 등 근태관리(근태리더기)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적법한 조치
- * 2016년 지각 및 조퇴 직원의 연간 합산 누계시간이 8시간 초과한 5명에게 연차휴가 1일로 산정하지 않고 연차수당 1,304,640원을 과다 지급
- * 2016년 지각, 조퇴 횟수 및 출근, 퇴근, 유연근무제 등 근태관리(근태리더기)를 소홀히 한 7명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원 복무(지각, 조퇴)점검 및 관리를 소홀(주의요구 7명)

2017-30 주택임차금대부금 대여 부적정

< 요약 >

「주택임차금대부업무 처리지침」 및 「2017년도 예산집행지침」

○ 직원 전보발령에 따른 주택임차금 회수

- 도청소재지에서 기타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경우 대부한도 3천만 원을 초과 대부금은 반환

* ○○지사(도청소재지), ○○지사(기타지역)

* 근무지를 기준으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이상 지역은 4천만 원을, 기타 지역은 3천만 원을 대부한도

* 「주택임차금 대부규칙」에 따라 주택임차금 1천만 원과 지연이자 399,500원을 회수 조치

바. 인사행정 및 교육행정 분야

2017-23 계약제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요약 >

「계약제직원관리지침」

○ 계약제직원 채용 면접심사 및 근로계약서 개선

- 계약제 직원 채용 면접시험 채점표에 역량과 품격을 겸비한 인성을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

- 계약제 직원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훼손 우려

* 근로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의 내용이 “갑”은 “을”이 “계약직관리지침 제12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명시

* 계약제 직원 고용 시 역량과 품격을 겸비한 인성 검증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고용계약 해지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제직원관리지침」을 개정

2017-24 직원근무성적평정표 출근상황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

< 요약 >

「근무성적평정규칙」

○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직원근무성적평정표 평정요소 개선

- 직원용, 연구직용, 교수직용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서식의 평정요소 중 출근상황 평정요소의 평정기준 형평성

평정요소	직원용	연구직용	교수직용
출근상황	결근, 조퇴, 지각한 사실에 대한 평가? (전혀없음: 10점, 결근1회, 지각조퇴 3회 이내: 6, 결근2회, 지각조퇴 6회 이내: 3, 결근 3회, 지각조퇴 7회 이상: 1점)	결근, 조퇴, 지각한 사실에 대한 평가? (전혀없음: 5점, 가끔있음: 3점, 지각·조퇴 4회 이상: 1점)	결근, 조퇴, 지각한 사실에 대한 평가? (전혀없음: 5점, 가끔있음: 3점, 지각·조퇴 4회 이상: 1점)

- *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중 출근상황 평정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근무성적평정규칙」을 개정

2017-25 공로연수비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 요약 >

「공로연수운영지침」

○ 공로연수자 공로연수지원비 통제절차 개선

- 공로연수지원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를 효과적·효율적으로 통제

- * 공로연수비 부적절 집행사례

- ○○○○○○○사업소, ○○관광, ○○○○○○○○, ○○, ○○○ ○○업 등
- 신청서 부실 작성, 신청서 누락, 해외견학 등

- * 공로연수지원비 승인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공로연수운영지침」에 마련

- * 2016년 국회 지적사항

< 요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 승진의 제한, 포상제한, 징계감경 금지, 의원면직 제한 규정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승진, 포상,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 및 징계감경 금지 규정 등을 제정하여 제도를 운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정부 경영지침을 준용하지 않는 등 징계관련 규정 개정 업무처리에 소홀

* 경영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관련자에 대한 승진 및 포상제한 등 관련 내용이 내부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요약 >

「징계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 견책 수준인 불문경고의 처분효력

– 견책 수준인 불문(경고) 처분효력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음

– 공사의 현재 규정으로 불문(경고) 처분은 아무런 처분효력이 없는 실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부규정에 반영하지 않아 정부 경영지침을 준용하지 않음

* 2016년 ○○○○부 정기종합감사 처분사항(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및 징계 감경 부적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개정 업무처리 소홀

* 징계 감경에 따른 불문(경고)의 처분효력이 실효성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요약 >

「유연근무제운영지침」 및 「유연근무제운영매뉴얼」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선

- ‘시간제근무’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무형태로 이 경우 1일 최장 근무시간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
- ‘원격근무’는 근무유형에 대한 관련지침과 운영매뉴얼과의 상이
 - * 공사의 업무형편 및 현실성을 감안하여 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근무유형, 승인절차, 신청 및 해제시기 등 관련지침의 개정이 필요
 -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과 관련한 ‘시간제근무’ 및 ‘원격근무’ 운영방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2017- 7	○○○○부	본사 실시 연구용역 성과물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권고요구			2개월	
2017- 8	○○○○부	예산집행지침에 관한 사항	권고요구			2개월	
2017- 9	○○○○실	측량장비 검·교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권고요구			2개월	
2017-10	○○○○처	민원(지적재조사, GPS, 중장기, CS)담당자 휴대폰 사용료 지급 부적정	개선요구 시정요구	회수 5,324,910		2개월 1개월	
2017-11	○○○○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2017-12	○○○○부	연구용역 등 검사·검수 처리 소홀	주의요구		2명	20일	
2017-13	○○○○부	신규사업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2017-14	○○○○○부	공사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권고요구			2개월	
2017-15	○○○○○처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권고요구			2개월	
2017-16	○○○○○처	에티오피아 사업타당성 용역 검수 부적정	문책요구		1명	20일	
2017-17	○○○○○처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가입비 회수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9,438,180		1개월	
2017-18	○○○○○처 외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1,886,130		1개월	
2017-19	○○○○부	초과근무수당 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2017-20	○○○○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2017-21	○○○○실	국외출장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2017-22	○○○○실	직원 복무(지각, 조퇴) 점검 및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주의요구	회수 1,304,640	7명	1개월 20일	
2017-23	○○처	계약제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2017-24	○○처	직원 근무성적평정표 출근상황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2017-25	○○처	공로연수비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법인)	개선요구			2개월	
2017-26	○○처	정부 경영지침(징계규정 등) 이행 소홀	권고요구			2개월	
2017-27	○○처	징계 감경(불문경고)에 관한 사항	권고요구			2개월	
2017-28	○○처	유연근무제(시간제근무 및 원격근무)운영지침 개선	개선요구			2개월	
2017-29	○○처	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2017-30	○○○○처	주택임차대부금 대여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10,399,500		1개월	
계		24건		28,353,360			

※ 처분요구: 24건<개선 11건, 권고 7건, 시정 4건, 문책요구 1건, 주의요구 1건>

※ 신한회계법인 감사 1건 포함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연구용역 등 검사·검수 처리 소홀	주의요구	○○○○○○실 ○○○○부	계약직 5급 국토정보직 6급	강○○ 손○○	연구용역 등의 검사·검수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9호에 따라 “주의요구”
에티오피아 사업타당성 용역 검수 부적정	무책(주의)	○○○○○처	국토정보직 6급	장○○	에티오피아 사업타당성 용역 검사·검수를 소홀히 한 국토정보직 6급 장○○을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책처분
직원 복무(지각, 조퇴) 점검 및 관리 부적정	주의요구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정○○	직원 복무(지각, 조퇴, 출근, 퇴근, 유연근무제 등)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지각, 조퇴 횟수 및 출근, 퇴근, 유연근무제 등 근대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9호에 따라 “주의요구”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이○○	
			국토정보직 5급	곽○○	
			국토정보직 5급	전○○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신○○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6급	박○○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4급	심○○	

1-2. 제도개선 처분요구 명세

일련 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감사자
2017- 7	○○○○부	본사 실시 연구용역 성과물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본사에서 공사 예산 등을 투입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등(ISP/BPR 포함)의 성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모든 부서에서 성과물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본사 실시 연구용역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	
2017- 8	○○○○부	예산집행지침에 관한 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출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2017- 9	○○○○실	측량장비 검·교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측량장비의 정확도 및 정밀도 향상과 측량장비의 성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주기 조정 방안을 강구 ②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대체장비 입·출고(공차)가 발생할 경우 자산변동 내역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ERP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	
2017-10	○○○○처	민원(지적제조사, GPS, 중장기, CS) 담당자 휴대폰 사용료 지급 부적정	민원담당자 휴대폰 사용료 지급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 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017-11	○○○○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바로처리 콜센터 상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규칙」을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	
2017-13	○○○○부	신규사업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 제도를 형평성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업무의 완료시점에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	
2017-14	○○○○○○부	공사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제3차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	
2017-15	○○○○○○처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국내 공간정보산업체의 해외진출 및 민간기업과 동반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17-19	○○○○부	초과근무수당 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	초과근무수당이 특근명령부 초과근무시간과 상이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지침」에 명시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일을 당월 말일에서 익월 초로 변경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절차를 개선	
2017-20	○○○○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대하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등에 부합 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지침 폐지를 검토하여 시행	
2017-21	○○○○실	국외출장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국외출장 현황관리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지연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출장 지침」을 개정	
2017-23	○○처	계약제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계약제 직원 고용 시 역량과 품격을 겸비한 인성 검증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고용계약 해지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제직원 관리지침」을 개정	
2017-24	○○처	직원 근무성적평정표 출근상황 평정 기준에 관한 사항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중 출근상황 평정기준을 형평성에 맞도록 「근무성적평정규칙」을 개정	
2017-25	○○처	공로연수비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공로연수지원비 승인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로연수운영지침」에 마련	
2017-26	○○처	정부 경영지침(징계규정 등) 이행 소홀	정부 경영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관련자에 대한 승진 및 포상제한 등 관련 내용이 내부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권고	
2017-27	○○처	징계 감경(불문경고)에 관한 사항	징계 감경에 따른 불문(경고)의 처분효력이 실효성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	
2017-28	○○처	유연근무제(시간제근무 및 원격근무) 운영지침 개선	「유연근무제 운영지침」과 관련한 ‘시간제근무’ 및 ‘원격근무’ 운영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2017-29	○○처	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계약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본부 및 부설기관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의계약사유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마련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단위: 건, 원)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금액	감사자
9- 1	○○○○○○○처	경영공시 자가점검표 작성 소홀	현지통보		
9- 2	○○○○○○○처	용역 발주에 따른 회의비 지출 소홀	현지통보		
9- 3	○○○○○○부	용역 결과물의 활용 활성화 노력 및 산출물 효율적 사용 소홀	현지통보		
9- 4	○○○○○○부 외	가족사랑의날 중복 사용에 관한 사항	현지시정	회수 137,600원	
9- 5	○○○○○실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知 봉사단 운영 소홀	현지통보		
9- 6	○○○○○실	경력증명발급 업무처리 소홀	현지통보		
9- 7	○○○○○○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등록 소홀	현지통보		
9- 8	○○처	법인카드 전산등록 및 관리 소홀	현지통보		
9- 9	○○○○○처	휴직자 동계근무복 및 현장화 지급에 관한 사항	현지통보		

V.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반부패·청렴교육

	
감사 업무보고	감사결과 총평 및 마감회의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4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고요구

제 목 본사 실시 연구용역 성과물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부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사업 다각화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개발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연구기획부서장은 연구결과물관리 대장에 연구수행결과물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비공개연구과제는 비공개 연구결과물 관리대장에 연구 수행 결과물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99조에 따라 “연구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최종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연구 수행에 따른 성과물 등이 담당자 인사이동이 발생 하여도 손실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유사 연구용역 실시 등으로 예산의 중복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사에서 실시한 다양한 연구용역 등(ISP/BPR 포함)의 성과물 또한 손실 방지와 활용 확대 및 예산의 중복지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표] 2015년~2016년도 본사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성과물 관리 현황

연구명	부서	관리현황	
고객중심 CS 경영혁신체계구축 연구용역	○○○○처	도서	사무실 공용 캐비닛 및 개인 책상서랍
		파일	전자결재 등재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자연재해 피해 저감 방안 연구	○○○○○○○실	도서	사무실 공용 캐비닛, 개인 책상서랍
		파일	<u>사무실 개인 책상서랍, 개인 PC</u>
국가 철도기본공간정보체계 구축 전략 마련	○○○○○○○실	도서	사무실 공용 캐비닛, 개인 책상서랍
		파일	<u>사무실 개인 책상서랍, 개인 PC</u>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간정보체계 도입 방안 연구	○○○○○○○실	도서	사무실 공용 캐비닛, 개인 책상서랍
		파일	<u>사무실 개인 책상서랍, 개인 PC</u>
3차원 원형기록 데이터 품질검증방안 연구	○○○○○○○실	도서	사무실 공용 캐비닛, 개인 책상서랍
		파일	연구관리시스템, 사무실 개인 책상서랍, 개인 PC
접근불능지역의 국토정보통합분석시스템 개발 시범연구용역	○○○○○○○실	도서	사무실 공용 캐비닛, 개인 책상서랍
		파일	<u>사무실 개인 책상서랍, 개인 PC</u>
지적확정측량 수행체계 변화에 따른 제 도개편 수립	○○○○○실	도서	사무실 공용 보안금고
		파일	<u>사무실 공용 보안금고</u>
성과중심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과 조 직인력 운영체계 정립	○○○○○실	도서	사무실 공용 보안금고
		파일	<u>사무실 공용 보안금고</u>
지적재조사 추진백서 편찬 연구용역	○○○○○○처	도서	사무실 공용 캐비닛
		파일	<u>사무실 개인 책상서랍 및 공용 캐비닛</u>
ISP/BPR 등 기타	○○○○○처	도서	정보센터 내화금고
		파일	<u>정보센터 내화금고</u>
	○○○○○처	도서	사무실 캐비닛(잠금장치)
		파일	

※ “본사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등 성과물 관리 현황 제출(○○○-1121: 2017. 3. 10.)에 따른 취합자료 재구성

그러나 [표] 현황과 같이 2015년~2016년 본사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성과물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부서에서 사무실 개인·공용 서랍, 개인PC 등에 보관하고 있어 담당자 인사이동, 부서 간 위치이동 등의 상황 발생 시 소중한 성과물이 분실될 여지가 있다.

또한 연구용역 등의 성과물이 담당 부서 서랍 또는 금고 등에 보관되고 있어 다른 부서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도 파악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부는 현재 본사 실시 연구용역 성과물의 관리가 미흡하고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감사 권고내용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부장)은 본사에서 공사 예산 등을 투입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등(ISP/BPR 포함)의 성과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모든 부서에서 성과물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본사 실시 연구용역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고요구

제 목 예산집행지침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부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임직원 등이 공사의 업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는 「여비규정」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여비규정」 제4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집행지침」 4. 목별 세부지침 마. 여비교통비 8)_(다)¹⁾에서는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사 조직 및 업무의 특성상 전국 시·군·구에 국토정보교육원, 본부 및 지사가 산재해 있어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1) 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 ②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③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⑤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이용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예산집행지침」의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이 모호하여 [표] 현황과 같이 실제로는 자가용을 이용하지만 대중교통비로 여비정산을 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

[표] 공무여행 운임 정산 현황(표본 추출)

번호	출장일	출장지	지출금액	실비정산 시 예상금액			차액
				계	통행료 (왕복)	유류비	
합계			496,950	902,880	334,000	568,880	-405,930
1	2017-01-19	부산	47,400	95,860	25,600	70,260	-48,460
2	2017-01-24	울산	52,500	111,070	29,400	81,670	-58,570
3	2017-01-24	충주	35,000	69,800	51,600	18,200	-34,800
4	2017-02-07	양주	68,800	101,140	38,400	62,740	-32,340
5	2017-02-10	춘천	79,400	120,270	45,600	74,670	-40,870
6	2017-02-16	양평	61,600	83,010	22,600	60,410	-21,410
7	2017-02-21	○○○○○○진흥원	55,200	80,340	31,600	48,740	-25,140
8	2017-02-22	서울	37,000	89,790	35,600	54,190	-52,790
9	2017-02-23	○○○○교육원, 성남	33,250	79,430	26,800	52,630	-46,180
10	2017-02-24	○○○○교육원	26,800	72,170	26,800	45,370	-45,370

- ※ 1. 공무여행 운임 정산 현황은 실제 소요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여행거리 및 통행료는 출장지의 시청을 기준
 3. 유가(2017. 2. 15. 기준) 및 연비는 예산집행지침 휘발유 차량 기준

따라서 대중교통이 불편(차량운행 시간)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증빙서류(톨게이트 영수증 등)를 첨부하면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 의견 ○○○○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여비 지급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출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고요구

제 목 측량장비 검·교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공사 보유 측량장비의 품질개선과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측량장비 검·교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업무규정」 제27조²⁾에 따라 “공사에서는 측량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해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토달스테이션, GPS수신기, 레벨 등에 대하여 3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측량장비 검·교정센터 운영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당해 성능검사 대상 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분임책임자에게 알리고, 성능검사 신청에 의해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 측량장비 성능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

위 공사는 검·교정 시설과 측량장비 성능검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측량

2) 업무규정 제27조(측량장비 성능검사) ①측량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장비와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1. 토달스테이션: 3년 2. 지피에스(GPS) 수신기: 3년 3. 레벨: 3년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절차 및 검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장비 성능검사 계획을 통지³⁾하여 측량장비 수리 및 성능검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체 품질강화를 위해 검·교정 센터에서는 [표 1] 현황과 같이 ‘14년부터 성능검사 주기를 3년에서 2.5년으로 단축⁴⁾하여 성능검사 및 수리를 하였다.

[표 1] 연도별 성능검사 및 수리실적 현황

[단위: 대]

품 명		'16년 실적		'15년 실적		'14년 실적		비 고
		목표	완료	목표	완료	목표	완료	
합 계		800	878	752	833	747	760	
성 능 검 사	토탈스테이션	439	439	468	459	540	546	
	GNSS측량장비	228	228	174	197	94	89	
	레벨	13	13	10	10	13	13	
수리		120	198	100	167	100	112	

그리고 ○○○○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발표('15. 5.27.)에 따르면 정부에서 공사에 공적역할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기능을 부여하였고,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16년 7월~)되었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성능검사 주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문기관에 걸 맞는 측량장비 품질관리를 위해 “○○○○기구(KOLAS-013)⁵⁾ 및 ○○○○○○협회의 측정기기 교정대상·주기 기준(2년) 또는 현재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기준(2.5년)” 등을 고려하여 측량장비 성능검사 주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측량장비 성능검사 관련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위 공사에서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실시에 따라 성능검사 실적을 전사적자원 관리시스템(이하 “ERP시스템”이라 한다) 측량기기성능검사 조회 서비스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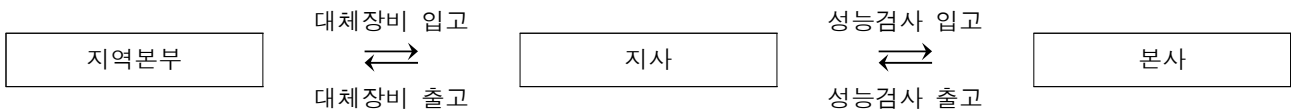
3) 측량장비 성능검사 계획 통지: 사업지원부-769(2011. 2.23.)

4) 검·교정센터 운영계획: 사업지원실-420(2014. 1.28.)

5) 한국인정기구(KOLAS-013):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 지침(주기 2년)

그리고 성능검사 대상 장비의 경우 성능검사 일자가 도래 되면 [표 2] 현황과 같이 지역본부와 지사 간 대체장비 입·출고(공차)에 따른 자산이동현황이 발생하게 되며, 자산이동현황은 측량장비 관리요령 제3조에 따라 ERP시스템 자산변동목록에 따라 관리한다.

[표 2] 성능검사 대상장비 관리 절차



그러나 ERP시스템 자산변동목록은 본부 간 관리전환, 본지사이동 등 해당 변동사항을 기재할 목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성능검사 대상 장비와 대체장비 입·출고(공차)가 발생할 경우에 자산변동 내역을 등록·관리하기에는 장비 이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성능검사 대상 장비에 대한 대체장비 변동사항을 [표 3] 현황과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ERP시스템 자산관리 개선(예시)

측량기기성능검사신청									
장비종류		토달스테이션							
사용부서		서울지역본부							
취득일		1900-01-01 ~ 2017-03-14							
☐ 선택	자산번호	신청일	검사번호	완료여부	사용부서	제조회사	기기번호	취득일	
☐	06-200708-0001	2016-03-03			서울강남서초	SET 230R	157893	2007-08-10	
☐	06-200708-0004				서울중부지사	SET 230R	157791	2007-08-10	
☐	06-200708-0006	2016-04-08			서울서대문문명	SET 230R	157147	2007-08-10	
☐	06-200708-0007	2016-03-23			서울공간정보사	SET 230R	157402	2007-08-10	
☐	06-200708-0009	2016-07-05			서울지적사업처	SET 230R	157415	2007-08-10	
☐	06-200708-0028	2016-05-31			서울지적사업처	SET 230R	156041	2007-08-10	
☐	06-200708-0080	2016-09-05			서울강남서초	SET 230R	158152	2007-08-10	
☐	06-200708-0084	2016-04-08			서울남부지사	SET 230R	156357	2007-08-10	

※ 자산관리-자산변동관리-자산변동내역등록-측량기기성능검사 신청(인계기관 내역 조회-인수기관 등록)

관계부서 의견 ○○○○실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기구 및 ○○○○○○협회의 기준과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측량장비 성능검사 주기를 조정한다는 의견과 본부 및 지사에서 성능검사를 위한 대체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 ①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측량장비의 정확도 및 정밀도 향상과 측량장비의 성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주기 조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②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대체장비 입·출고(공차)가 발생할 경우 자산 변동 내역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ERP시스템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시정요구(회수)

제 목 민원(지적재조사, GPS, 중장기, CS)담당자 휴대폰 사용료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업무 처리에 활용하는 직원의 개인소유 휴대폰에 대하여 사용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 개정⁶⁾에 따르면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직원소유의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을 현장측량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일시적인 파견 및 지원인력은 지급을 제한”하도록 지급대상을 [표] 현황과 같이 개정하였다.

[표]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대상 개정 내용(2015. 6. 8.)

구분	현행	개정	개정사유
지급대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근무하는 지적측량업무종사(현장보조인력 포함)직원으로 한다.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사업단에 근무하는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업무 현장측량직원(보조인력포함)으로 한다. (단, 본사○○○○교육원·○○○○연구원·지역본부에서 지사 파견자는 제외)	지급대상을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업무 현장측량 인력으로 한정 ※ 민원, 마케팅, GPS측량 지원 등 일시적인 파견 및 지원인력은 제외

※ 2015년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대상 개정 내용 재구성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 운영 중인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35조를 보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민원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현황과 같이 본부 필수인력인 민원, 지적재조사, GPS, 중장기, CS

6)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 개정 알림(지적사업실-2851: 2015. 6. 8.)

담당자가 일시적인 측량업무 지원 및 파견 등에 대한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제외하지 않고 2015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역본부 6명 2,833,200원, ○○지역본부 3명 1,248,610원, ○○지역본부 4명 1,243,100원, 3개 지역본부 총 13명에 대하여 5,324,910원을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되고 있어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35조의 불필요한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업무처리의 혼선으로 필수인력인 민원, 지적재조사, GPS, 중장기, CS담당자 13명에게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5,324,91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처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5,324,910원에 대하여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 ① 민원담당자 휴대폰 사용료 지급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② 민원(지적재조사, GPS, 중장기, CS)담당자 13명에게 지급된 휴대폰 사용료 5,324,91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담당자 휴대폰 사용료 지급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필수인력 민원, 지적재조사, GPS, 중장기, CS담당자 휴대폰 보조금 지급 내역

기관	전담팀 현황		담당업무	소속	일시적인 파견 및 지원기간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기간	보조금 지급 금액	휴대폰 지급 금액 (총합계 기재)	사업 지원 여부	지급사유
	직급	성명								
○○지역본부	3급	연○○	민원	○○지사(현)	2015.08.18.	2015. 6. 1.~2015.12.31.	268,080	395,95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5.08.24.~08.28					
					2015.09.04					
					2015.10.20					
					2015.11.11					
					2015.11.16.~11.17					
					2015.12.01					
					2015.12.03					
2016.2.15.~2.19	2016. 1. 1.~2016. 2. 28.	127,870								
○○지역본부	4급	임○○	민원 지적재조사	○○지사(현)	2015.06.19	2015. 6. 1.~2015.12.31.	299,020	442,12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5.08.18					
					2015.09.04					
					2015.09.8					
					2015.12.2					
○○지역본부	4급	추○○	민원 GPS	○○지사(현)	2015.08.18	2015. 6. 1.~2015.12.31.	292,470	424,69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5.08.24.~08.28					
					2015.09.04					
					2015.09.16					
					2015.09.17					
					2015.10.12					
					2015.10.14					
					2015.11.11					
					2015.11.16.~11.17					
					2015.12.03					
○○지역본부	4급	김○○	민원 지적재조사	○○○○처	2016. 3.16.~2016. 3.18.	2016. 3. 1.~2016.12.31.	441,180	541,18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6. 3.24.					

					2016. 4. 8.					
					2016.10.17.~2016.10.21.					
					2016.11. 3.~2016.11. 4.					
					2016.11. 7.~2016.11. 8.					
					2016.11.15.~2016.11.16.					
						2017. 1. 1.~2017. 1. 31.	100,000			
○○지역본부	5급	박○○	민원 중장기	○○지사(현)	2016. 3. 14~2016. 3.18.	2016. 3. 1.~2016.12.31.	450,000	550,00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6. 4. 8.					
					2016. 6. 7.					
					2016. 8. 29~2016.9.2.					
					2016.10.17.~2016.10.21.					
					2016.11. 3.~2016.11. 4.					
					2016.11. 7.~2016.11. 8.					
					2016.11.15.~2016.11.16.					
						2017. 1. 1.~2017. 1. 31.	100,000			
○○지역본부	5급	최○○	민원 CS	○○1부(현)	2016. 3. 14~2016. 3.18	2016. 3. 1.~2016.12.31.	395,300	479,26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6. 4. 8.					
					2016. 4.22.~2016. 4.23.					
					2016.11. 7.~2016.11. 8.					
					2016.11.15.~2016.11.16.					
						2017. 1. 1.~2017. 1. 31.	83,960			
소계		6명					2,833,200	2,833,200		
○○지역본부	4급	이○○	민원	○○○○처	2015.6.01.	2015.6.1.~2015.6.30.	38,610	438,61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5.6.04.~2015.6.05.					
					2015.6.08.~2015.6.09.					
					2015.6.11.					
					2015.6.23.					
					2015.7.27.	2015.7.1.~2015.7.31.	50,000			

					2015.7.28.~2015.07.29..					
					2015.8.04.	2015.8.1.~2015.8.31.	50,000			
					2015.8.06.					
					2015.8.11.					
					2015.8.3.					
					2015.8.4.					
					2015.8.5.					
					2015.8.6.					
					2015.8.12.					
					2015.8.26.					
					2015.8.28.					
					2015.8.31.					
					2015.9.01.	2015.9.1.~2015.9.31.	50,000			
					2015.9.02.					
					2015.9.03.					
					2015.9.4.					
					2015.9.9.					
					2015.9.11.					
					2015.10.11.	2016.10.01.~2106.10.31	50,000			
					2015.11.3.	2015.11.01.~2015.11.31.	50,000			
2015.11.4.										
2015.11.6.										
	2015.12.01.~2015.12.31.	50,000								
	2016.01.01.~2016.01.31.	50,000								
2016.02.22.~2016.02.23.	2016.02.01.~2013.02.28.	50,000								
○○지역본부	5급	윤○	민원	○○○○처	2015.6.1.	2015.6.1.~2015.6.30.	50,000	450,00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5.6.8.~2015.6.9.					
						2015.07.01.~2015.07.31.	50,000			
					2015.8.5.	2015.08.01.2015.08.31.	50,000			
					2015.8.6.					
					2015.8.26.	2015.09.01.2015.09.31.	50,000			
					2015.9.10.					
						2015.10.01.2015.10.31.	50,000			
					2015.11.5.	2015.11.01.~2015.11.31.	50,000			
						2015.12.01.~2015.12.31.	50,000			
	2016.01.01.~2016.01.31.	50,000								
○○지역본부	5급	황○○	민원	○○○○처	2016.2.19.	2016.02.01.~2016.02.28.	50,000	360000	o	
					2015.6.1.	2015.6.1.~2015.6.31.	50,000			
					2015.6.5.					
					2015.7.27.	2015.7.14.2015.7.31.	50,000			
					2015.7.28.~2015.7.29.					
					2015.8.5.	2015.8.1.~2015.8.31.	50,000			
					2015.8.6.					
					2015.8.11.					
					2015.8.12.					

					2015.8.26.							
					2015.8.28.							
					2015.8.31.							
											2015.9.1.~2015.9.31	50,000
											2015.10.1.~2015.10.31	10,000
											2015.11.1.~2015.11.31	50,000
											2015.12.1.~2015.12.31	50,000
											2015.1.1.~2015.1.31.	0
											2015.2.1.~2015.2.28.	50,000
소계		3명					1,248,610	1,248,610				
○○지역본부	4급	박○○	민원	○○○○처	2015.6.4.	2015.6.1.~2015.6.30.	50,000	40000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5.6.9.							
					2015.6.15.							
					2015.6.16.							
					2015.6.23.							
					2015.6.24.							
					2015.7.2.~2015.7.3.	2015.7.1.~2015.7.31.	50,000					
					2015.7.7.							
					2015.7.10.							
					2015.7.14.							
					2015.7.22.							
					2015.7.23.							
					2015.7.24.							
					2015.7.27.	2015.8.1.~2015.8.31	50,000					
					2015.7.28.							
					2015.7.29.							
					2015.8.3.							
					2015.8.4.							
					2015.8.5.							
					2015.8.6.							
					2015.8.10.							
					2015.8.11.							
					2015.8.13.							
					2015.8.18.							
					2015.8.19.							
					2015.8.24.							
					2015.8.26.							
					2015.8.27.							

					2015.8.28.	2015.9.1.~2015.9.30	50,000			
					2015.9.9.					
					2015.9.10.					
					2015.9.11.					
					2015.9.24.					
					2015.9.30.					
					2015.10.15.	2015.10.1.~2015.10.31	50,000			
					2015.10.19.					
					2015.10.26.					
					2015.11.9.	2015.11.1.~2015.11.30	50,000			
					2015.11.12.					
					2015.11.24.					
					2015.12.1.	2015.12.1.~2015.12.31	50,000			
					2015.12.21.					
					2015.12.22.					
					2016.1.28.	2016.1.1.~2016.1.31.	50,000			
					2016.2.15.					
					2016.2.22.					
○○지역본부	5급	조○○	민원	○○○○처	2015.6.4.	2015.6.1.~2015.6.30.	50,000	400,00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5.6.5.					
					2015.6.9.					
					2015.6.11.					
					2015.6.15.					
					2015.6.16.					
					2015.6.19.					
					2015.6.23.					
					2015.6.24.					
					2015.7.2.~2015.7.3.	2015.7.1.~2015.7.31.	50,000			
					2015.7.7.					
					2015.7.10.					
					2015.7.14.					
					2015.7.21.					
					2015.7.22.					
					2015.7.23.					
					2015.7.24.					
					2015.7.29.					
					2015.8.3.	2015.8.1.~2015.8.31	50,000			
					2015.8.4.					

					2015.8.5.					
					2015.8.6.					
					2015.8.10.					
					2015.8.11.					
					2015.8.13.					
					2015.8.18.					
					2015.8.19.					
					2015.8.24.					
					2015.8.26.					
					2015.8.27.					
					2015.8.28.					
					2015.9.1.	2015.9.1.~2015.9.30	50,000			
					2015.9.2.					
					2015.9.3.					
					2015.9.9.					
					2015.9.10.					
					2015.9.11.					
					2015.9.22.					
					2015.9.24.					
					2015.9.30.					
					2015.10.19.	2015.10.1.~2015.10.31	50,000			
					2015.10.26.					
					2015.11.5.	2015.11.1.~2015.11.30	50,000			
					2015.11.9.					
					2015.11.12.					
					2015.11.19.					
					2015.11.24.					
					2015.12.1.	2015.12.1.~2015.12.31	50,000			
					2015.12.21.					
					2015.12.22.					
					2015.12.24.					
					2016.1.12.					
2016.1.18.	2016.1.1.~2016.1.31.	50,000								
2016.1.28.										
2016.2.15.										
2016.2.22.										
○○지역본부	5급	구○○	민원	○○○○처	2015.6.4.	2015.6.1.~2015.6.30.	50,000	200,00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5.6.5.					
					2015.6.9.					
					2015.6.15.					

					2015.6.16.					
					2015.6.17.					
					2015.6.19.					
					2015.6.24.					
					2015.6.30.					
					2015.7.7.	2015.7.1.~2015.7.31.	50,000			
					2015.7.29.					
					2015.7.31.					
					2015.8.4.	2015.8.1.~2015.8.31	50,000			
					2015.8.6.					
					2015.8.10.					
					2015.8.11.					
					2015.8.13.					
					2015.8.18.					
					2015.8.19.					
					2015.8.24.					
					2015.8.26.					
					2015.8.27.					
					2015.8.28.					
					2015.9.7.	2015.9.1.~2015.9.30	50,000			
					2015.9.9.					
					2015.9.10.					
					2015.9.11.					
					2015.9.16.					
					2015.9.22.					
					2015.9.24.					
					2015.9.30.					
					2015.10.15.					
					2015.10.22.					
					2015.11.4.					
					2015.11.5.					
2015.11.19.										
2015.11.25.										
2015.12.24.										
2016.1.12.										
○○지역본부	6급	지○○	민원	○○○○처	2015.10.19.	2015.10.1.~2015.10.31	47,610	240,710	o	사업지원인력으로 지사 업무지원
					2015.10.22.					
					2015.10.26.					
					2015.11.4.	2015.11.1.~2015.11.30	50,000			
2015.11.5.										

					2015.11.12.								
					2015.11.17.								
					2015.11.24.								
					2015.12.1.	2015.12.1.~2015.12.31	50,000						
					2015.12.21.								
					2015.12.22.								
						2016.1.1.~2016.1.31.	50,000						
						2016.2.1.~2016.2.29.	43,100						

소계	4명					1,240,710	1,240,710		
----	----	--	--	--	--	-----------	-----------	--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고객 중심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2년 10월 15일부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규칙」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콜센터의 관리부서는 정보운영처로 되어 있고,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담원의 분장 사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콜센터 상담원의 근무 수칙 중 연차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연차일의 3일 전까지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콜센터의 운영일은 법정 근무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콜센터 관리자는 상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콜센터 근무 시간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연 근무제를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사는 “2015년 인력운영계획(안) 및 직제규정시행규칙 제정(안)⁷⁾에 따라 부서 간 사무조정을 [표 1] 현황과 같이 시행하였다.

[표 1] 부서 간 사무조정 현황(시행일: 2015. 1. 1.)

사 무	현 행	조 정
바로처리콜센터 운영	○○○○처	○○○○처

※ 2015년 인력운영계획(안) 및 직제규정시행규칙 제정(안) 자료 재구성

7) 2015년 인력운영계획(안) 및 직제규정시행규칙 제정(안): ○○○○실-9830(2014. 12. 31.)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규칙」에 부서 간 사무 조정으로 콜센터 관리부서가 ○○○○처에서 ○○○○처로 변경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콜센터 상담원의 근무수칙 중 연차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연차일의 3일 전까지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불평등한 수칙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콜센터의 운영일은 법정 근무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되어 있어 [별표] 콜센터 상담 직원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현황과 같이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콜센터 상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규칙」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규칙」을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 의견 ○○○○처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규칙」 및 “콜센터 상담원의 근무수칙”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바로처리 콜센터 상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규칙」을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콜센터 상담 직원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현황(2017년 2월)

성명	승인당시소속	직렬	직급	근무일자	승인 시간	실제 근무시간	신청사유	신청구분	근태 출근시간	근태 퇴근시간	근태오전 초과근무	근태오후 초과근무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01	01:30	01:30	콜백 및 카드상담건확인	사후신청	08:47	20:31	00:00	01:3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02	02:30	02:40	지적관련법규 숙지	사전신청	08:45	21:45	00:00	02:4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06	01:30	01:30	측량수수료 관련규정 숙지	사전신청	08:43	20:32	00:00	01:3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09	02:00	02:00	상담건 서류확인 및 처리	사전신청	06:54	21:07	02:00	02: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09	02:00	02:00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집 숙지	사전신청	06:54	21:07	02:00	02: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10	03:00	03:00	상담처리 및 관계법령확인외	사전신청	08:39	22:06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14	03:00	03:00	2017년 콜센터 운영계획에 따른 자료취합	사전신청	08:44	22:13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16	02:00	02:00	콜센터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처리	사전신청	08:37	21:04	00:00	02: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0	02:30	03:00	콜센터 업무 인계인수에 따른 업무처리	사전신청	08:42	23:40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09	03:00	03:00	상담건 및 지적측량 수수료적용 확인	사후신청	08:39	22:27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10	01:00	01:00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산출 확인	사전신청	07:53	18:11	01:00	00: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13	01:00	01:00	측량수수료 적용 예시 숙지 등	사후신청	07:57	18:12	01:00	00: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14	03:00	03:00	지적측량수수료 해설 확인	사전신청	07:57	22:13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14	01:00	01:00	지적측량관계법령 숙지	사전신청	07:57	22:13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0	01:00	01:00	지적측량수수료 교육자료 확인	사전신청	07:57	21:12	01:00	02:1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0	02:10	02:10	콜센터 사업 계획 분석	사후신청	07:57	21:12	01:00	02:1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1	03:00	03:00	직원회의 서류 작성등	사전신청	07:52	22:15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1	01:00	01:00	바로처리센터 운영규정 확인	사전신청	07:52	22:15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2	01:10	01:10	회의서류, 근로자파견 용역 근태 확인	사전신청	07:46	18:14	01:10	00: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4	02:40	03:00	콜 상담일지 분석외	사전신청	08:35	22:13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09	03:00	03:00	지적관련 법규 확인 등	사후신청	08:38	22:26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10	03:00	03:00	2017 알기쉬운 지적측량 수수료 해설 확인 등	사전신청	08:31	22:06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14	03:00	03:00	2017년 지적측량 수수료 확인 등	사전신청	08:32	22:13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0	02:10	02:10	2017년 지적측량 수수료 예시 확인 등	사후신청	08:47	21:16	00:00	02:1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1	03:00	03:00	콜센터 관련 문서 확인 등	사전신청	08:35	22:31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3	03:00	03:00	2016년 질의회신 확인 등	사전신청	08:38	22:13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4	02:50	03:00	2016년 질의회신 확인 등	사전신청	08:39	22:13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06	03:00	03:00	접수.상담업무확인	사전신청	08:34	22:08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09	03:00	03:00	상담업무 확인	사후신청	08:37	22:27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10	03:00	03:00	콜센터 운영현황확인	사후신청	08:38	22:06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14	03:00	03:00	콜센터 게시판 확인	사전신청	08:32	22:13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0	02:00	02:10	근태확인 및 상담업무 확인	사후신청	08:42	21:16	00:00	02:1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1	03:00	03:00	직원회의서류 작성	사전신청	08:37	22:31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5급	2017-02-24	03:00	03:00	상담업무확인 및 매뉴얼 정리	사전신청	08:43	22:13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03	02:00	02:00	상담 건 서류 확인	사후신청	08:46	21:05	00:00	02: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07	01:00	01:20	수수료관련 규정 숙지	사전신청	07:34	18:11	01:20	00: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09	03:00	03:00	인터넷접수건 서류 보완	사전신청	07:59	22:27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09	01:00	01:00	상담건 서류 정비	사전신청	07:59	22:27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0	01:00	01:00	상담건 수수료 적용 확인	사전신청	07:51	18:11	01:00	00: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4	03:00	03:00	COS개선여부 테스트	사전신청	08:20	22:14	00:4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4	00:40	00:40	COS 개선사항정리	사전신청	08:20	22:14	00:4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5	01:10	01:10	팩스건 서류 확인	사전신청	07:50	22:07	01:1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7	01:30	01:30	인터넷접수 확인 및 시스템오류정리	사전신청	07:30	21:03	01:30	02: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0	01:10	01:10	인터넷접수 건 확인	사전신청	07:49	22:27	01:1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0	02:50	03:00	팩스상담 건 서류 확인 및 등록	사후신청	07:49	22:27	01:1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1	01:00	01:00	접수건 수수료 규정 적용확인	사전신청	07:56	22:15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1	03:00	03:00	상담건 서류 확인	사전신청	07:56	22:15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2	01:10	01:10	시스템 오류 사항 정리	사전신청	07:50	18:14	01:10	00: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4	01:10	02:40	시스템오류사항 확인	사전신청	07:44	21:41	01:10	02:4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4	01:10	01:10	인터넷접수건 확인	사전신청	07:44	21:41	01:10	02:4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7	01:10	01:20	상담건 서류 확인	사전신청	07:35	18:17	01:20	00: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09	03:00	03:00	상담서류작성	사전신청	08:49	22:26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0	01:00	01:00	상담 매뉴얼 작성	사전신청	07:51	18:07	01:00	00: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4	02:40	02:40	상담 및 접수 서류처리	사후신청	08:30	21:40	00:30	02:4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4	00:30	00:30	이동접수 매뉴얼 검토	사전신청	08:30	21:40	00:30	02:4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5	03:00	03:00	상담건 수수료 적용 검토	사후신청	08:39	22:09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6	03:00	03:00	상담 접수건 서류처리	사후신청	08:00	22:16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6	01:00	01:00	상담 매뉴얼 작성	사후신청	08:00	22:16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7	01:50	02:30	접수서류처리	사후신청	08:42	21:33	00:00	02:3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0	03:00	03:00	상담 매뉴얼 수정 작성	사후신청	08:38	22:27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1	01:00	01:00	상담 서류 처리	사전신청	07:56	22:31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1	03:00	03:00	시스템 개선사항 검토	사전신청	07:56	22:31	01: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3	02:00	02:00	지적측량수수료 사례집 검토	사전신청	08:42	21:08	00:00	02: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4	01:30	02:00	이동지 접수 매뉴얼 검토	사전신청	08:28	21:09	00:30	02: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4	00:30	00:30	상담 서류 처리	사전신청	08:28	21:09	00:30	02: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4	03:00	03:00	측량상담건 첨부서류 보완 및 공간정보법 개정내용 숙지 외	사전신청	08:23	22:07	00:3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16	03:00	03:00	카드결제건 접수확인 및 분할관련법 적용사례 숙지 외	사전신청	08:29	22:10	00:3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0	02:00	02:10	인터넷신청건 접수확인 및 수수료 규정 숙지	사전신청	08:25	21:12	00:30	02:1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1	01:00	01:10	측량상담건 접수확인 및 팩스 신청건 처리 외	사전신청	08:27	20:12	00:30	01:10

김○○	바로처리콜센터	국토정보직	6급	2017-02-23	01:00	01:00	상담건서류첨부및 카드결제건 접수확인 외	사전신청	08:26	20:05	00:30	01:00
김○○	바로처리콜센터		보조인력	2017-02-09	02:00	02:00	상담내용확인	사전신청	08:12	21:07	00:40	02:00
김○○	바로처리콜센터		보조인력	2017-02-10	02:00	02:40	상담내용확인.	사전신청	08:04	21:49	00:50	02:40
김○○	바로처리콜센터		보조인력	2017-02-15	02:00	02:20	수수료,카드결제내역확인	사전신청	08:33	21:21	00:00	02:20
김○○	바로처리콜센터		보조인력	2017-02-17	01:00	01:10	카드결제승인확인	사후신청	07:48	18:12	01:10	00:00
김○○	바로처리콜센터		보조인력	2017-02-20	01:00	01:00	상담내용확인.	사전신청	07:51	18:20	01:00	00:00
김○○	바로처리콜센터		보조인력	2017-02-21	02:00	03:00	상담내역확인	사후신청	08:09	22:31	00:5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보조인력	2017-02-09	03:00	03:00	상담내용 확인	사전신청	08:40	22:05	00:0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보조인력	2017-02-10	02:00	02:40	고객응대 메뉴얼 검토	사후신청	08:36	21:49	00:00	02:40
김○○	바로처리콜센터		보조인력	2017-02-14	02:00	03:00	신청상담건 확인 검토	사전신청	08:14	22:13	00:40	03:00
김○○	바로처리콜센터		보조인력	2017-02-20	02:00	02:10	상담 신청건 확인 검토	사전신청	08:14	21:16	00:40	02:10
김○○	바로처리콜센터		보조인력	2017-02-21	01:00	03:00	측량 상담건 검토	사전신청	08:19	22:31	00:40	03:00

※ erp 개인별 초과근무 현황 자료 재구성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주의요구

제 목 연구용역 등 검사·검수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부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사업 다각화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용역 등의 진행과정은 계약기간 내 일정표에 맞추어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단계에서는 납품될 성과품의 내용이 공사 요구 사항과 부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이 검사에 합격된 성과품의 수량 등 적정하게 납품되었는지를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관련 연구용역 등을 마무리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용역의 “검사 과정”은 공사에서 요구한 내용이 적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기술된 내용이 공사의 요구사항과 활용 가능성에는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사 과정을 마친 성과품은 공사에서 요구한 수량·품질 등에 부합하는 지 등을 확인하는 “검수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향후 성과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표 1] “A연구 과제” 요구사항 내역과 검사·검수 현황

제안
요청
내역

1. ○○○분야 ○○작성 및 관리 실태 조사

2.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 피해 저감 방안

3. ○○ 업무 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 개발

4. 공간정보기술 기반 ○○지도 작성 기술 개발 전략 등

5. 주요결과물 및 제출시기

○ “

20부(CD 2매 포함)

○ 제안서 평가 : 공고문 참고

○ 추진기관 선정 및 계약 : 공고문 참고

○ 최종보고회 개최 : 계약 완료 10일 전

○ 연구결과 접수 : 계약기간 완료 후 14일 이내

□ 검수결과 요약

요구사항	완료여부	검수결과	비고
국내 외 관련업체 분석 계약제도 구축 현황 조사 분석	완료	적합	
국내외 관련 업체(○○○, UAV SAR, 지상라이다 등 공간정보기술 조사 분석	완료	적합	
-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 피해 저감 방안 마련	완료	적합	
- ○○○○○○ 작성 방법론 재정립 및 검증	완료	적합	
- ○○○○○○ 작성 업무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 및 공사 역할 정립	완료	적합	
- LX공사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정책 분석	완료	적합	
- 관련 법령 및 LX 공사 정관 분석	완료	적합	
-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별 적용(안) 마련	완료	적합	
- ○○○○○○ 정책 분석 및 연계방안 도출	완료	적합	
- ○○○○○○ 작성 분야에서의 LX공사 역할 정립	완료	적합	
산출물	초안확인 (완료제출)	적합	- 원료보고서 20부 - 산출물 CD 2개

납품산출물 검수확인 목록

용역명: 방안 연구

□ 성과품

성과물 내역	구분	확인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제출시	적합	
용역추진 공정표	월간보고서	적합	
연구결과에 대한 초안 보고서	과업완료14일전	적합	
결과보고서 20부	원료결과물 (과업완료시)	조안대체	산출물 CD 2식 copy

원료보고서 초안 및 산출물 CD



□ 최종 검수 의견 : 적합

[준공검수자] 소속: 2024년 1월 15일

[검수입회자] 소속: 2024년 1월 15일

직급: 2024년 1월 15일

직급: 2024년 1월 15일

성명: 2024년 1월 15일

성명: 2024년 1월 15일

※ ○○○○○○실 “A연구 과제” 추진계획 및 검수결과보고서 재구성

그러나 [표 1] 현황과 같이 “A연구 과제”의 경우 “검사 과정”에서 공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완료 적정성을 점검하여 “적합” 판정하였으나, 산출물 부문에서는 최종 산출물이 아닌 “초안확인”한 사항을 “적합”으로 판정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검수 과정”에서는 과업 완료 후 제출되어야 할 결과보고서 20부에 대하여 “초안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검수처리 하였고 산출물 사진에서도 보고서 1부, CD 1식만 게시되어 있어 용역의 완료 결과물인 최종보고서 20부, CD 2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행정 처리되어 있다.

[표 2] “B연구 과제” 요구사항 내역과 검사·검수 현황

제안 요청 내역	1. ○○ 통합관리의 중요성 및 당위성 확보 2. ○○ 기 구축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3. ○○ 통합 공간정보 구축 방안 수립 4. ○○ 활용체계 수립 등	○ 성과물 제출목록 <table border="1"> <tr> <th>산출물 종류</th> <th>산출물 개요</th> <th>제작성기</th> <th>비 고</th> </tr> <tr> <td>사업수행계획서</td> <td>사업일정, 연구조직, 역할, 사업범위 등</td> <td>용역착수제출 시</td> <td></td> </tr> <tr> <td>용역추진 증명표</td> <td>용역추진에 따른 세부 증명표</td> <td>매주 중간보고 시 제출 보고회 개최 3일전 제출</td> <td></td> </tr> <tr> <td>착수 중간·최종 보고</td> <td>보고회 자료</td> <td></td> <td></td> </tr> <tr> <td>월간 보고서</td> <td>매달 진행 일정 보고</td> <td>익월 5일까지</td> <td></td> </tr> <tr> <td>용역 결과보고서</td> <td>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결론 등 최종 연구의 결과</td> <td>과업 완료 시</td> <td>50부 및 CD 2개 copy</td> </tr> </table>	산출물 종류	산출물 개요	제작성기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일정, 연구조직, 역할, 사업범위 등	용역착수제출 시		용역추진 증명표	용역추진에 따른 세부 증명표	매주 중간보고 시 제출 보고회 개최 3일전 제출		착수 중간·최종 보고	보고회 자료			월간 보고서	매달 진행 일정 보고	익월 5일까지		용역 결과보고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결론 등 최종 연구의 결과	과업 완료 시	50부 및 CD 2개 copy																													
산출물 종류	산출물 개요	제작성기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일정, 연구조직, 역할, 사업범위 등	용역착수제출 시																																																					
용역추진 증명표	용역추진에 따른 세부 증명표	매주 중간보고 시 제출 보고회 개최 3일전 제출																																																					
착수 중간·최종 보고	보고회 자료																																																						
월간 보고서	매달 진행 일정 보고	익월 5일까지																																																					
용역 결과보고서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결론 등 최종 연구의 결과	과업 완료 시	50부 및 CD 2개 copy																																																				
검사 내역	□ 검수결과 요약 <table border="1"> <thead> <tr> <th>요구사항</th> <th>완료여부</th> <th>검수결과</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에 대한 정의 및 통합관리 필요성</td> <td>완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관리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개념 정의</td> <td>완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기 구축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td> <td>완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사용자 요구 및 업무 분석</td> <td>완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표준화 적용방안, 국가 기본지리정보 및 지적도 연계방안</td> <td>완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공간정보간의 연계방안 수립</td> <td>완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개발 구축, 관리, 운영에 따른 공동 활용 기반마련</td> <td>완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공조체계 및 재원 확보 방안, 조직체계 구성 방안</td> <td>완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방안</td> <td>완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LX공사 내부 인력활용, S/W 구축방안</td> <td>완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중장기 추진계획, 법/제도 검토</td> <td>완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산출물 - 완료보고서 50부 - 산출물 CD 2개</td> <td>초안확인 (완료제출)</td> <td>적합</td> <td></td> </tr> </tbody> </table>			요구사항	완료여부	검수결과	비고	에 대한 정의 및 통합관리 필요성	완료	적합		관리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개념 정의	완료	적합		기 구축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완료	적합		사용자 요구 및 업무 분석	완료	적합		표준화 적용방안, 국가 기본지리정보 및 지적도 연계방안	완료	적합		공간정보간의 연계방안 수립	완료	적합		개발 구축, 관리, 운영에 따른 공동 활용 기반마련	완료	적합		공조체계 및 재원 확보 방안, 조직체계 구성 방안	완료	적합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방안	완료	적합		LX공사 내부 인력활용, S/W 구축방안	완료	적합		중장기 추진계획, 법/제도 검토	완료	적합		산출물 - 완료보고서 50부 - 산출물 CD 2개	초안확인 (완료제출)	적합	
요구사항	완료여부	검수결과	비고																																																				
에 대한 정의 및 통합관리 필요성	완료	적합																																																					
관리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개념 정의	완료	적합																																																					
기 구축 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완료	적합																																																					
사용자 요구 및 업무 분석	완료	적합																																																					
표준화 적용방안, 국가 기본지리정보 및 지적도 연계방안	완료	적합																																																					
공간정보간의 연계방안 수립	완료	적합																																																					
개발 구축, 관리, 운영에 따른 공동 활용 기반마련	완료	적합																																																					
공조체계 및 재원 확보 방안, 조직체계 구성 방안	완료	적합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방안	완료	적합																																																					
LX공사 내부 인력활용, S/W 구축방안	완료	적합																																																					
중장기 추진계획, 법/제도 검토	완료	적합																																																					
산출물 - 완료보고서 50부 - 산출물 CD 2개	초안확인 (완료제출)	적합																																																					
검수 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납품산출물 검수확인 목록</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 성과물</td> </tr> <tr> <th>구분</th> <th>성과물 내역</th> <th>확인</th> <th>비고</th> </tr> <tr> <td rowspan="7">제출자료 (과업추진)</td> <td>사업수행계획서</td> <td>적합</td> <td></td> </tr> <tr> <td>참여인력제적증명서</td> <td>적합</td> <td></td> </tr> <tr> <td>보안서약서</td> <td>적합</td> <td></td> </tr> <tr> <td>착수보고회 자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중간보고회 자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최종보고회 자료</td> <td>적합</td> <td></td> </tr> <tr> <td>연구결과에 대한 초안 보고서</td> <td>적합</td> <td></td> </tr> <tr> <td>완료결과물 (과업완료시)</td> <td>결과보고서 50부</td> <td>초안대체</td> <td>산출물 CD 2식 copy</td> </tr> </tbody> </table> [준공검수자] 소속: 직급: 과장 성명: (인) [검수입회자] 소속: 직급: 과장 성명: (인)			납품산출물 검수확인 목록				□ 성과물				구분	성과물 내역	확인	비고	제출자료 (과업추진)	사업수행계획서	적합		참여인력제적증명서	적합		보안서약서	적합		착수보고회 자료	적합		중간보고회 자료	적합		최종보고회 자료	적합		연구결과에 대한 초안 보고서	적합		완료결과물 (과업완료시)	결과보고서 50부	초안대체	산출물 CD 2식 copy														
납품산출물 검수확인 목록																																																							
□ 성과물																																																							
구분	성과물 내역	확인	비고																																																				
제출자료 (과업추진)	사업수행계획서	적합																																																					
	참여인력제적증명서	적합																																																					
	보안서약서	적합																																																					
	착수보고회 자료	적합																																																					
	중간보고회 자료	적합																																																					
	최종보고회 자료	적합																																																					
	연구결과에 대한 초안 보고서	적합																																																					
완료결과물 (과업완료시)	결과보고서 50부	초안대체	산출물 CD 2식 copy																																																				

※ ○○○○○○실 “B연구 과제” 추진계획 및 검수결과보고서 재구성

그러나 [표 2] 현황과 같이 “B연구 과제”의 경우 “검사 과정”에서 공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완료 적정성을 점검하여 “적합” 판정하였으나, 산출물 부문에서는 최종 산출물이 아닌 “초안확인”한 사항을 “적합”으로 판정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검수 과정”에서는 과업 완료 후 제출되어야 할 결과보고서 20부에 대하여 “초안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검수처리 하였고 산출물 사진에도 최종보고서가 아닌 출력물을 게시하는 등 연구용역의 검사·검수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부는 감사처분에 이견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연구용역 등의 검사·검수 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9호에 따라 “주의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본사 ○○○○○○○실 ○○○○부 계약직 5급 강○○

본사 ○○○○○○○실 ○○○○부 국토정보직 6급 손○○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신규사업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부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신규사업의 개발과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규사업 운영지침」 제4조 내지 제7조에 신규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신규사업의 개발과 수주 활동의 기여도에 따라 업무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기관 또는 직원에게 개발보상금과 수주보상금⁸⁾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2007년부터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수주활동을 통하여 수주한 업무에 대하여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 또는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사는 2015. 6. 4.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정관」 제37조(사업)에 “기본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사업, 국토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사업, 국가공간정보체계

8) 새 업무 보상금 지급 정책 결정

○ ○○○○○○회 심의 의결(2006. 12. 11.)

○ 새 업무 개발 및 수주보상금 지급계획(안): ○○○○팀-646(2007. 4. 27)

- 개발보상금: 2007. 1. 1. 이후 개발된 새 업무부터 지급

- 수주보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7. 1. 1. 이후 추진된 업무부터 적용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에 관한 지원 사업,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1. 수주보상금에 관한 사항

따라서 공간정보사업은 공사에서 수행하는 주된 사업으로서 공사의 건전 경영을 위하여 지적업무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수주하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 ○○○○부에서는 「신규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표 1] 현황과 같이 신규사업의 수주활동과 지원을 한 기관 및 개인에게 기여도에 따라 완료금액의 0.5%~2.0%를 수주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표1] 신규사업 보상금 지급현황

(2016. 1. 1. ~ 12. 31.)

(금액단위: 천 원)

기관명	신규사업 완료금액	2016년도 보상금 지급 현황			비고
		합계	개발보상금	수주보상금	
합계	38,329,194	457,222	21,144	436,078	
○○지역본부	1,358,622	32,520	1,928	30,592	
○○○○지역본부	1,589,901	18,414	1,491	16,923	
○○지역본부	1,854,072	14,994	0	14,994	
○○지역본부	11,043,075	155,609	5,915	149,694	
○○지역본부	1,587,932	8,895	0	8,895	
○○지역본부	2,213,374	26,067	3,311	22,756	
○○○○지역본부	2,962,744	36,262	2,450	33,812	
○○지역본부	2,243,565	17,045	499	16,546	
○○○○지역본부	3,493,435	39,383	1,491	37,892	
○○○○지역본부	5,659,868	62,319	385	61,934	
○○지역본부	2,674,392	33,777	3,175	30,602	
○○지역본부	1,648,214	11,937	499	11,438	

※ 자료: ○○○○○○○실 제공

이는 공사의 주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발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업무(지적재조사, 개방업무, 해외 사업, 연구사업, 교육사업 등)를 수행하는 기관 및 직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또한 위 공사 ○○○○○○실에서는 신규사업 수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를 「신규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의 완료시점에 개발·수주 활동과 지원을 한 기관 및 개인에게 기여도에 따라 개발보상금과 수주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표 2]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최장 5년 3개월이 넘도록 사업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재정적 행정력의 낭비로 인해 공사의 건전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표2] 미수수료가 존재하는 신규사업 보상금 지급 현황

(2017. 3. 6.현재)

(금액단위: 천 원)

기관 명	본부	지사	사업명	완료현황		미수수료	보상금 지급 현황			
				일자	금액		지급일	계	개발	수주
○○○○○○○	○○○○○○○	○○○○○○○	○○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2-09-28	48,097	48,097	2012-11-23	962	-	962
			○○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3-07-01	21,804	21,804	2013-11-26	436	-	436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3-09-24	74,360	74,360	2013-11-26	1,487	-	1,487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14-02-18	25,897	25,897	2014-05-19	518	-	518
			○○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5-02-27	8,984	8,984	2015-04-27	180	-	180
○○○○○	○○○○○	○○○○○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1-12-15	28,938	28,938	2011-12-29	579	-	579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2-08-21	29,436	29,436	2012-11-28	589	-	589
				2012-08-21	696	696	2012-11-28	14	-	14
○○○○○	○○○○○	○○○○○	○○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11-12-30	239,350	132,078	2012-05-24	4,787	-	4,787
				2011-12-30	232,440	232,440	2012-05-24	4,649	-	4,649
				2011-12-30	29,714	29,714	2012-05-24	594	-	594
			○○구역 도시개발사업	2015-12-21	784	784	2016-06-23	16	-	16
				2015-12-21	6,109	6,109	2016-06-23	122	-	122
				2015-12-22	87,858	42,403	2016-06-23	1,757	-	1,757
○○○○○	○○○○○	○○○○○	도로구역 변경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성	2016-12-02	124	124	2016-12-22	2	-	2
				2016-12-02	124	124	2016-12-22	2	-	2
○○○○○	○○○○○	○○○○○	○○○○○○○○조성사업	2012-12-31	60,290	54,476	2013-05-14	1,206	-	1,206
합계					895,005	736,464		17,900	-	17,900

※ 자료: ○○○○○○실 제공

따라서 신규사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의 완료시점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부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 제도를 형평성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보상금 지급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규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부장)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 제도를 형평성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업무의 완료시점에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고요구

제 목 공사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부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미래 역량강화 및 정책제안 등이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게시하여 다양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사는 2015. 6. 4.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공사의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10대 미래전략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방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홍보부스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새출범 1주년 기념 10대 미래전략 콘텐츠 전시회 개막식 (2016. 6. 2.)”을 통해 10대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여 공사의 역량과 Vision을 제시하고 국토에 가치를 더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 1,692명(내부 479명, 외부 1,213명) 2016년 1,713명(내부 376명, 외부 1,337명)이 미래전략 콘텐츠 부스를 관람하는 등 홍보성적을 거두었다.

[표] 2015년, 2016년 개발된 미래전략 콘텐츠 현황 및 활용성과

콘텐츠명		담당자	활용성과
1	위성타고 떠나는 40년 국토여행	조○○, 김○○, 이○○	
2	숨은 국토를 찾아드립니다.	이○○	
3	LX, 우리 국토에 안전을 입히다	전○○, 김○○, 김○○	안전진단 업무 확산
4	통일은 내일 올 수도 있다.	김○○, 김○○, 이○○	○○부 정책제안
5	동해와 독도, 고지도 속에서 진실 찾기	정○○	
6	LX, 기본공간정보, 국토정보의 초석입니다.	이○○	○○부 기본공간정보체계 개선 계획 참여
7	국민과 함께 돈 버는 공간정보	유○○, 김○○	'16년 창업지원 근거
8	공간 빅데이터로 그리는 세상	최○○, 배○○	빅데이터 분석 사업 확대
9	3D로 불로장생하는 문화유산	손○○	○○○청 품질관리기관 정책제안
10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신기술	임○○, 이○○, 강○○	UAV업무 등 신기술관 련 업무 확산
11	대한민국 2050 미래 향해	조○○, 이○○, 이○○	빈집 등 언론홍보 및 ○○○부 연구과제 수주
12	2050 국토의 미래 모습	임○○, 신○○, 김○○	
13	2050 탄소배출권, 숲속의 숨겨진 가치	지○○, 임○○	
14	국민에게 국토정보 공간 퍼주기	공○○	국가공간정보포털 위탁관리기관 지정
15	청년 창업을 위한 국토정보 장마당을 열다.	김○○, 원○○	청년창업지원 10건 선정 및 지원
16	국토정보로 그리는 새만금 복합도시	김○○, 이○○	
17	LX와 함께 만드는 정책지도	송○○, 김○○	○○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18	LX인만 알고 있는 국토변화의 법칙	정○○, 박○○, 이○○	
19	통일은 내일 올 수도 있다(II)	윤○○	○○부 정책제안
20	국토정보와 사물인터넷	최○○, 천○○	○○○○교 통항높이(60m→63m) 규칙 개정

그리고 [표] 현황과 같이 개발된 콘텐츠는 “○○○○교 통항높이 규칙 개정”, “기본공간정보체계 개선 계획 참여”, “국가공간정보포털 위탁관리기관 지정” 등 다양한 활용성과도 창출하였다.

공사 미래전략 콘텐츠는 2년간 3,405명의 관람 실적과 규칙 개정, 위탁기관 지정 등의 콘텐츠의 활용성과를 창출하는 등 당초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미래전략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도출, 사업 등의 구조화·체계화, 콘텐츠 핵심 분석, 홍보부스 제작, 보고서 작성 등 기획부터 홍보부스 제작까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장정의 업무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간과 본연의 업무 이외에 추가로 상당한 노력 등이 투입되는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 담당자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지난 2년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미흡은 수동적 콘텐츠 개발로 연결될 것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노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사 모든 직원이 능동적으로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 담당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 의견 ○○○○○부는 감사처분에 대하여 이견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부장)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제3차 미래전략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고요구

제 목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016년 경영전략 체계 미션·비전·핵심 가치 중 핵심가치에 “세계를 향한 도전_국내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 한국형 국토정보 모델 수출과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No. 1이 되고자하는 공사의 업무추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공사에서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체의 해외진출 및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공간 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이하 “해외진출지원센터”라 한다)”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2012. 7. 26(○○○○부-2000);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계획(안)」에 따라 추진하여 2012. 12. 28.에 완료 및 오픈하였으며

중장기 경영목표(2016~2020)에서는 “전략목표_해외진출지원센터 서비스 고도화” 및 “전략과제_해외사업 지원센터 스마트 운영과 해외시장 진출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적 해외정보 허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외시장 진출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통한 민간기업 동반성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실질적 지원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중장기 경영목표(2016~2020)를 추진하면서 [표1], [표2]와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미나/간담회 11회 및 해외로드쇼를 2회 개최하고도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

[표1] 세미나/간담회 개최 현황

연도	행사명	장소	날짜
2015년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지역본부	2015. 3. 13.(금)
		○○상공회의소	2015. 8. 21.(금)
		○○○ 호텔	2015. 9. 17.(목)
	로드쇼 사전간담회	공간정보 아카데미	2015.10. 23.(금)
	로드쇼 사후간담회	○○지역본부	2015.12. 16.(수)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지역본부	2015.12. 16.(수)
2016년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지역본부	2016. 4. 15.(금)
		○○○ 호텔	2016. 9 . 1.(목)
		서울 ○○○○○ 회의실	2016. 9. 23.(금)
		○○○○○○진흥원	2016.10. 17.(월)
	로드쇼 사후간담회	○○지역본부	2016.12. 16.(금)

[표2] 해외로드쇼 개최 현황

연도	장소	기간	주최
2015년	인도네시아	‘15.11.6.(금)~’15.11.10.(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흥원
2016년	캄보디아	‘16.11.6.(금)~’16.11.11.(수)	한국국토정보공사, ○○○○○○진흥원

또한 [표3]과(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같이 해외사업 입찰정보, 국제행사, 상담실, 법률/정책 자료 및 진출지원자료 등의 지속적 갱신 및 운영에 대하여 최신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표3]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현황

홈페이지 메뉴		연도별 자료등록 건수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해외시장정보	공지사항	43	1	3	11	18	9	1
	국제입찰	67	1	36	27	3		
	국제행사	81	9	26	42	3	1	
해외진출지원	해외로드쇼			등록	등록	미등록	미등록	
	세미나/간담회	6		3	3	미등록	미등록	
	상담실	18	7	6	3	2		
자료실	법률/정책	49	21	28				
	진출지원자료	39	3	6	4	21	5	

따라서 사업경험이 부족한 민간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시장개척을 통해 민간기업과 동반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 의견 ○○○○○처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국내 공간정보산업체의 해외진출 및 민간기업과 동반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해외진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현황

1. 해외시장정보_공지사항

순번	유형	제 목	일 시	내 용	첨부파일	조회
1	기타	센터 홈페이지 공식 오픈	12-12-28 ~ 12-28	오픈일시, 설립배경, 지원내용(정보제공, 지원사업, 자문지원)	×	1,325
2	전시회	2013 베트남 공간정보 Roadshow	13-04-03 ~ 04-05	사업개요, 세부내용(행사명, 일시, 장소 등), 모집 안내(신청방법, 제출서류, 모집처 등)	로드쇼_참가신청서	1,484
3	기타	대한지적공사 본사 사옥이전 관련	13-11-18 ~ 11-29	본사 사옥이전 관련 센터의 변경사항 공지	×	1,107
4	간담회	‘공간정보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개최 알림	13-12-23 ~ 12-23	공간정보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파악	공간정보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_개최안내	879
5	간담회	2014 공간정보 해외로드쇼 관련 기업 간담회	14-03-21 ~ 03-21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인원 파악	- 간담회 개최 알림 - 간담회 개최 계획	1,459
6	간담회	2014 공간정보 글로벌 기술공유 워크숍(수정)	14-04-30 ~ 04-30	워크숍 개최 장소, 일시, 발표 희망 기업 조사, 일정표, 안내도 등	×	867
7	간담회	2014 공간정보 글로벌 기술공유 워크숍 발표 자료 공유	14-04-30 ~ 04-30	발표자료 공유에 따른 파일 첨부	- 기관, 세션1, 세션2	1,162
8	전시회	2014 공간정보 해외로드쇼 취소	14-05-19 ~ 05-22	인도네시아 해외로드쇼 취소	×	832
9	교육	공간정보 산업분야 취업예정 교육생모집 안내	14-06-16 ~ 11-12	교육개요, 교육생 지원 사항, 교육내용 요약, 모집절차 및 일정, 서류접수 등	- 교육생 모집 안내 - 교육훈련과정 - 참가 지원서	914
10	교육	공간정보 산업체 재직자 교육 수강신청 안내	14-05-22 ~ 12-31	교육개요, 교육 일반사항, 컨소시엄 협약사항 등	- 수강신청 안내 - 교육수강 신청서	824
11	교육	LX아카데미, 공간정보 해외사업 전략과정 교육생 모집	14-06-25 ~ 06-26	교육명, 교육대상·목표기간, 세부교육일정	- 과정 개요서 - 공간정보아카데미 리플렛	923
12	설명회	2014 공간정보 해외인사 초청세미나 개최	14-08-25 ~ 08-26	일시, 장소, 주관, 초청인사, 주요내용	- 초청 세미나 개최안내	779
13	교육	「공간정보아카데미」 공간정보 해외사업 전략과정(2차)	14-10-22 ~ 10-23	교육명, 교육대상·목표기간, 교육내용, 시간표	- 과정 개요서	853

순번	유형	제 목	일 시	내 용	첨부파일	조회
14	기타	글로벌 CSR사업 협력업체 모집	14-10-08 ~ 10-15	사업개요, 모집개요, 지우너내용, 신청방법	모집공고문	871
15	전시회	2014년 스리랑카 공간정보 로드쇼 기업모집 공고	14-12-08 ~ 12-12	일시, 장소, 행사구성, 참가대상, 지원내용 등	로드쇼 참가신청서	823
16	기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내수기업의 수출기 업화지원사업	15-01-02 ~ 01-20	사업개요,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등	공고문 및 신청서	907
17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2015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1.18일까지)	14-12-29 ~ 15-01-18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문의처 등	모집 공고문	568
18	기타	201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5-02-05 ~ 02-13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절차	2015 대중소기업 동반~	856
19	기타	제1회 민간협력 워크숍	15-03-13 ~ 03-13	일시, 장소, 대상자, 워크숍 진행	×	669
20	기타	2015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 가 기업 모집 안내	05-03-13 ~ 03-20	사업개요,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향후 사업 추진 계획	×	742
21	기타	2015 제1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결과 보고	15-03-13 ~ 03-13	워크숍 개요, 목적, 주요내용	- 워크숍 자료집 - 2015 제1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결과보고	707
22	기타	2015 글로벌 CSR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15-04-27 ~ 05-08	사업개요, 모집개요, 지원내용, 신청방법	×	752
23	교육	공간정보 해외사업 전략과정 교육생 모집공고	15-06-04 ~ 06-05	교육과정, 일정, 장소, 비용, 신청, 내용, 신청기간, 문의사항	시간표_해외사업전략	651
24	간담회	페루 인프라 플랜트사업 투자 로드쇼 개최	15-05-14 ~ 05-14	일시, 장소, 내용, 참석대상, 문의처	Application.docx Notice3.pdf	640

순번	유형	제 목	일 시	내 용	첨부파일	조 회
25	기타	제2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15-08-14 ~ 08-14	일시, 장소, 참석기관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484
26	기타	제2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일정변경	15-08-21 ~ 08-21	일시, 장소, 참석기관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 약도	573
27	기타	2014/1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국내 공유세미나	15-08-26 ~ 08-26	행사명, 일시, 장소		971
28	기타	제3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15-09-17 ~ 09-17	일시/장소, 참석기관, 프로그램 일정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안)	667
29	설명회	2015 인도네시아 공간정보 로드쇼 개최에 따른 민간기업 모집	15-11-06 ~ 11-10	개최 목적, 출장지 및 기간, 주요일정,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867
30	기타	2015 인도네시아 공간정보 로드쇼 개최에 따른 민간기업 모집 결과 발표	15-11-06 ~ 11-10	2015 인도네시아 공간정보로드쇼 개최 참여 기업		783
31	전시회	2015 인도네시아 공간정보 로드쇼 개최 결과	15-11-06 ~ 11-10	공식 영문명칭, 행사기간장소주최주관, 행사 주요 내용, 주요 성과	2015 인도네시아 로드쇼 결과보고	736
32	기타	2015 인도네시아 공간정보 로드쇼에 참가한 인도네시아 정보조직 및 연락처	15-11-06 ~ 11-10	인도네시아 농업공간기획부 및 토지청의 주요간부 및 내각 구성 정보 공유	BPN 내각 소개자료	675
33	기타	인도네시아 건설사 워크숍 관련 자료 공개	15-11-10 ~ 11-10	인도네시아 건설사 진출현황, 건설사 워크숍 프로그램 등	- 인도네시아 건설사 진출 현황 - 건설사 워크숍 프로그램 - 건설사 참석자	761
34	기타	2016년 제1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16-04-15 ~ 04-15	워크숍 일시, 장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계획(안)	488
35	기타	2016 제1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결과 공유	16-04-15 ~ 04-15	워크숍 개요, 목적, 주요내용	- 워크숍 발표자료 - 워크숍 결과보고	1,479

순번	유형	제 목	일 시	내 용	첨부파일	조 회
36	기타	2016 스마트 국토엑스포 개최(SMART GEOSPATIAL EXPO 2016)	16-08-31 ~ 09-02	명칭, 슬로건, 일시, 장소		226
37	기타	2016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16-09-01 ~ 09-01	일시, 장소, 대상국가(캄보디아)		315
38	기타	2016 제2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발표자료 공유	16-09-01 ~ 09-01	2016 스마트 국토엑스포 기간 중 제2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을 실시하고 발로 자료 공유	- Expo Workshop 2016 발표용외 1	360
39	기타	제4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알림(캄보디아 로드쇼 추진 설명회)	16-10-17 ~ 10-17	일시, 장소, 주요내용		421
40	기타	해외진출지원센터 사이트 이용 제한 안내	16-10-14 ~ 10-15	해외진출지원센터 사이트의 이용 제한 안내		273
41	기타	2016 캄보디아 공간정보 해외로드쇼 개최에 따른 민간기업 모집	16-11-18 ~ 11-30	기간, 장소, 행사 주요내용, 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로드쇼 참가신청서	523
42	기타	2016 캄보디아 공간정보 로드쇼 후속간담회	16-12-16 ~ 12-16	일시, 장소, 참석자		168
43	기타	글로벌 원조사업 참여전략 설명회	17-01-17 ~ 01-17	프로그램 일정표		135

2. 해외시장정보_국제입찰_입찰정보

순번	국가	공 고 명	게시일	마감일	조회	비고
1	미국	COMMERCIAL REMOTE SENSING &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IES PROGRA	2012-12-17	2013-01-25	846	
2	미국	LIGHT DETECTION AND RANGING AERIAL SURVEY (LIDAR)	2013-01-29	2013-02-19	699	
3	인도	GPS(HAND HELD)	2013-02-04	2013-02-20	530	
4	폴란드	PL-Opoczno: Digital cadastral maps	2013-05-21	2013-03-03	386	
5	루마니아	RO-Bucuresti: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2013-05-21	2013-03-19	424	
6	스페인	E-Vitoria-Gasteiz: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2013-05-21	2013-04-08	838	
7	미국	Mapping and Cadastre Advisory Services Cape Verde	2013-05-21	2013-04-26	620	
8	캐나다	Contract GDD13-28, Request for Proposal for a Digital Aerial Photography, Photogrammetric Mapping and Ortho-Imagery Project	2013-05-21	2013-05-02	625	
9	오스트레일리아	Regional Flood Mapping	2013-05-21	2013-05-09	497	
10	미국	C--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Mapping Continuation at NAVFAC SW AOR	2013-05-21	2013-05-28	788	
11	미국	Wisconsin Wetlands Inventory Wetland Mapping, Aerial Photo Interpretation Services	2013-05-21	2013-06-04	540	
12	베트남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용역업체 선정	2013-06-03	2013-06-17	1,025	
13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F/S 용역 입찰공고	2013-06-03	2013-06-17	969	
14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F/S 용역 재입찰공고	2013-06-19	2013-07-04	673	
15	칠레	(KSP 시스템컨설팅) 칠레 지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2013-06-19	2013-07-01	587	

순번	국가	공 고 명	게시일	마감일	조회	비고
16	EU(코소보)	Kosovo-Pristina: IPA – Supply of specialised equipment for cadastral records	2013-09-30	2013-11-18	471	
17	불가리아	Bulgaria-Varna: Digital mapping services	2013-09-30	2013-11-11	519	
18	미국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IMPLEMENTATION & CONVERSION	2013-09-30	2013-10-31	816	
19	미국	RE-BID OF SATELLITE DATA SERVICES AND MAINTENANCE	2013-09-30	2013-10-29	458	
20	미국	C--INDEFINITE DELIVERY CONTRACT FOR ARCHITECT AND ENGINEERING (A-E) SERVICES FOR TOPOGRAPHIC AND HYDROGRAPHIC SURVEYING AND MAPPING SERVICES TO SUPPORT THE JACKSONVILLE DISTRICT AND THE SOUTH ATLANTIC DISTRICT	2013-09-30	2013-10-17	795	
21	미국	INDEFINITE DELIVERY ARCHITECT ENGINEER CONTRACT FOR SURVEYING, MAPPING AND RELATED GEOSPATIAL SERVICES, PRIMARILY WITHIN THE SOUTHWESTERN DIVISION (ARKANSAS, LOUISIANA, NEW MEXICO, OKLAHOMA AND TEXAS) AND ON A LIMITED NATIONWIDE BASIS	2013-09-30	2013-10-07	808	
22	중국	산동성 지진국 구호장비 구매 공개입찰	2013-09-30	2013-10-12	477	
23	몽골	몽골 국유재산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PMC용역업체 선정	2013-10-14	2013-10-23	654	
24	우즈베키스탄	[입찰예정-EDCF] 우즈베키스탄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사업	2013-10-17	2013-12-31	1,249	
25	도미니카공화국	[입찰예정-EDCF]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사업	2013-10-17	2014-01-01	673	
26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정보 전산화사업 PMC 용역업체 선정	2013-10-25	2013-11-20	805	
2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바 북부해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GIS구축용역업체 선정 입찰	2013-10-31	2013-11-20	778	
28	홍콩	3차원 육상 레이저 스캔 시스템	2013-11-18	2013-12-05	670	

순번	국가	공 고 명	게시일	마감일	조회	비고
29	캐나다	GIS Software Standing Offers	2013-11-18	2013-11-25	477	
30	루마니아	Romania-Bucuresti: Software package and information systems	2013-11-19	2014-01-07	682	
31	영국	United Kingdom-Glasgow: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surveying services	2013-12-05	2014-01-08	612	
32	미국	Surveying total stations and data collectors	2013-12-06	2013-12-19	427	
33	캐나다	Locating, marking and mapping underground water infrastructure at various locations within the City of Toronto	2013-12-06	2013-12-16	529	
34	캐나다	Professional Topographic Survey Services	2013-12-06	2013-12-16	519	
35	폴란드	Poland-Znin: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2013-01-27	2014-03-10	350	
36	체코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surveying services	2013-01-27	2014-03-24	365	
37	미국	Land-Boundary Surveys (A&E)	2013-01-28	2014-02-17	610	
38	헝가리	Hungary-Budapest: Digital mapping services	2014-02-07	2014-03-17	325	
39	영국	United Kingdom-Braintree: Software package and information systems	2014-02-07	2014-03-13	420	
40	싱가폴	Rehabilitation of Sewerage Network Phase 4 Colour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Survey of Sewers Contract 2 - Southern Area Calling Entity Public Utilities Board Singapore	2014-02-13	2014-03-06	527	
41	미국	Professional Cadastral Surveying IDIQ on the Green Mountain NF	2014-02-20	2014-03-14	427	
42	영국	United Kingdom-London: Telematics system	2014-02-20	2014-03-14	514	
43	코이카	2014년도 KOICA 대외무상원조사업 발주계획 공지	2014-02-27	2014-12-31	483	

순번	국가	공 고 명	게시일	마감일	조회	비고
44	미국	Cadastral Surveying Services on the National Forests in Florida Florida	2014-03-06	2014-03-27	459	
45	미국	RFQ_295-03-2014 Elevation LiDAR and aerial imagery QC Surveys	2014-03-06	2014-03-26	527	
46	영국	United Kingdom-London: Aerial mapping services United Kingdom	2014-03-07	2014-04-03	449	
47	아일랜드	Ireland-Dublin: Marine survey services	2014-03-07	2014-04-07	499	
48	미국	Surface Wetness and Crop Yield Forecast Products from Satellite Imagery	2014-03-07	2014-03-13	517	
49	캐나다	Orthophoto, LIDAR, Topographic and Oblique Mapping	2014-03-17	2014-03-19	432	
50	미국	C--Indefinite Delivery Contract for Surveying & Mapping Services to include Boundary Maintenance to support the Little Rock District and the Southwest Division	2014-03-17	2014-04-09	475	
51	미국	RTK GPS SYSTEM BASE AND ROVER	2014-03-17	2014-03-27	382	
52	노르웨이	Norway-Leikanger: Surveying services	2014-03-17	2014-04-08	455	
53	미국	R--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Services	2014-03-17	2014-03-21	459	
54	노르웨이	Norway-Hønefoss: Digital mapping services	2014-03-31	2014-04-22	465	
55	미국	Cadastral Surveying IDIQ on the Allegheny	2014-03-31	2014-04-24	565	
56	미국	Bathymetry Mapping System	2014-03-31	2014-04-23	561	
57	미국	GPS Bus Tracking System	2014-03-31	2014-04-07	668	
58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 '14년도 발주 예상 KSP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사업 리스트	2014-03-31	2014-12-31	539	
59	한국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사업 및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대상자 모집	2014-04-21	2014-05-02	1,057	

순번	국가	공 고 명	게시일	마감일	조회	비고
60	튀니지	(KSP 공동컨설팅) '튀니지 토지관리시스템 정보화 지원 사업' 입찰공고	2014-05-14	2014-05-22	661	
61	튀니지	<재공고>(KSP 공동컨설팅) 튀니지 토지관리시스템 정보화 지원 사업	2014-05-23	2014-06-02	869	
62	한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4년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2014-06-09	2014-06-10	797	
63	한국	2014년도 KOICA 대외무상원조협력사업 발주계획(2분기 수정본)	2014-07-14	2014-12-31	1,050	
64	우즈베키스탄	[입찰예정] 우즈베키스탄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사업	2014-09-30	2014-12-31	1,269	
65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5-06-23	2015-12-31	983	
66	엘살바도르공화국	국제입찰 공고(엘살바도르 국가등록청 디지털 사진측량 카메라 구매 사업)	2015-08-12	2015-09-14	839	
67	우루과이	우루과이 전국 이미지 구축사업 (Image Acquisition of National Coverage)	2015-02-04	2016-03-08	909	

3. 해외시장정보_국제행사_행사정보

순번	주관	제 목	일시	조회	비고
1	FIG	8th FIG Regional Conference (국제측량사연맹) 2012.11.26-29	2012-11-26 ~ 2012-11-29	538	
2	FIG	The FIG Commission 7 Annual meeting 2012 2012.11.30-12.4	2012-11-30 ~ 2012-12-04	441	
3	Esri	Esri Middle East and Africa User Conference 2012.11.30-12.4	2012-12-10 ~ 2012-12-12	534	
4	FIG	The Annual FIG Commission 3 workshop/conference 2012.12.10-14	2012-12-10 ~ 2012-12-14	398	
5	FIG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inform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 Gi4DM	2012-12-13 ~ 2012-12-15	410	
6	Xiamen University, China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in Remote Sensing (CVRS2012)	2012-12-16 ~ 2012-12-18	437	
7	AICIT	7th ICCCT: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and Convergence Technology (ICCIT, ICEI and ICACT)	2012-12-03 ~ 2012-12-05	580	
8	Intelligent Exhibitions Ltd	The European LIDAR Mapping Forum (ELMF)	2012-12-04 ~ 2012-12-05	624	
9	IQPC	GIS in Mining and Exploration 2012	2012-12-06 ~ 2012-12-07	908	
10	ISPRS	GIS Ostrava 2013 Geoinformatics for City Transformations	2013-01-21 ~ 2013-01-23	466	
11	ISPRS	DGI 2013 Defence Geospatial Intelligence (DGI):GeoInt Case Studies, Strategies & Technology	2013-01-21 ~ 2013-01-23	534	
12	Geospatial Media and Communications Pvt. Ltd.	India Geospatial Forum	2013-01-22 ~ 2013-01-24	501	
13	Intelligent Exhibitions Ltd	The International LIDAR Mapping Forum (ILMF)	2013-02-11 ~ 2013-02-13	668	
14	ISPRS	3D-ARCH 2013 3D Virtual Reconstruction and Visualization of Complex Architectures	2013-02-25 ~ 2013-02-26	484	
15	ISPRS	International Workshop	2013-02-27 ~ 2013-12-28	436	

순번	주관	제 목	일시	조회	비고
16	UN-GGIM	Second High Level Forum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2013-02-04 ~ 2013-02-06	591	
17	WB	World Bank Conference on Land and Poverty	2013-04-08 ~ 2013-04-11	454	
18	KSRS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ISRS) 2013	2013-05-15 ~ 2013-05-17	469	
19	○○○○원	공간정보포럼_6월 세미나_국가 빅 데이터 체계와 공간빅데이터 전략	2013-06-20 ~ 2013-06-20	490	
20	IQPC	GIS for Government	2013-06-24 ~ 2013-06-26	534	
21	Geospatial Media and Communications Pvt. Ltd.	Chile Geospatial Forum	2013-06-27 ~ 2013-06-28	558	
22	ISPRS	GI_Forum 2013	2013-07-02 ~ 2013-07-05	428	
23	ESRI	International User Conference	2013-07-08 ~ 2013-07-12	517	
24	IEEE GRSS	IEE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IGARSS) 2013	2013-07-21 ~ 2013-07-26	558	
25	Ordnance Survey	Cambridge Conference 2013 & The 3rd UN-GGIM	2013-07-24 ~ 2013-07-26	767	
26	IQPC	GIS in Mining & Exploration 2013	2013-07-31 ~ 2013-08-01	425	
27	Geospatial Media and Communications Pvt. Ltd.	Africa Geospatial Forum	2013-08-13 ~ 2013-08-14	548	
28	ICA	The 26th International Cartographic Conference	2013-08-25 ~ 2013-08-30	833	
29	ISDE	The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gital Earth (ISDE) 2013	2013-08-26 ~ 2013-08-29	544	
30	대한지적공사, ○○공사, ○○○○협회외 2	2013 스마트국토엑스포	2013-11-13 ~ 2013-11-15	552	

순번	주관	제 목	일시	조회	비고
31	SPAR	Point Group SPAR Europe/European LiDAR Mapping Forum 2013	2013-11-11 ~ 2013-11-13	450	
32	○○○○○진흥원	2013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2013-10-22 ~ 2013-10-23	507	
33	ESRI	Esri Asia Pacific User Conference	2013-11-12 ~ 2013-11-14	987	
34	ASPRS	ASPRS 2014 Annual Conference and co-located JACIE Workshop	2014-03-23 ~ 2014-03-28	777	
35	○○○○○○단(○○○○○)	○○○○○○단(○○○○○) 제21회 개발협력포럼	2013-11-29 ~ 2013-11-29	483	
36	ESRI	Geodesign Summit, ESRI	2014-01-29 ~ 2014-01-30	437	
37	Institute of Geography and ISPRS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inform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Gi4DM)	2013-12-09 ~ 2013-12-11	817	
38	Defence Geospatial Intelligence (DGI)	Defence Geospatial Intelligence (DGI) Conference & Exhibition 2014	2014-01-21 ~ 2014-01-23	650	
39	Corinium	GeoUtilities 2014	2014-01-28 ~ 2014-01-29	391	
40	ESRI	Esri Developer Summit	2014-02-12 ~ 2014-02-12	570	
41	SPAR Point Group	International LiDAR Mapping Forum Conference	2014-02-17 ~ 2014-02-19	448	
42	SPAR Point Group	SPAR International 2014	2014-04-14 ~ 2014-04-17	361	
43	CTTC	EuroCOW 2014	2014-02-12 ~ 2014-02-14	391	
44	3G AGSI	Geospatial Conference in Tunis 2014 (GCT)	2014-03-17 ~ 2014-03-21	740	
45	World Bank	2014 Land and Poverty Conference (World Bank)	2014-03-24 ~ 2014-03-27	456	

순번	주관	제 목	일시	조회	비고
46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AG Anunnal Meeting	2014-04-08 ~ 2014-04-12	429	
47	Netherlands Institute of Navigation (NIN)	ENC-GNSS 2014	2014-04-14 ~ 2014-04-17	565	
48	Interexpo GEO-SIBERIA Siberian State Academy of Geodesy	Interexpo GEO - SIBERIA 2014	2014-04-16 ~ 2014-04-18	395	
49	Intergeo Eurasia	Intergeo Eurasia	2014-04-28 ~ 2014-04-29	359	
50	Geospatial Media & Communications	Geospatial World Forum	2014-05-05 ~ 2014-05-09	393	
51	MundoGEO	MundoGEO#Connect Latin America 2014	2014-05-07 ~ 2014-05-09	338	
52	ISPRS Technical Commission IV	ISPRS TCIV Symposium on Geospatial Databases and Location-based Services	2014-05-14 ~ 2014-05-15	340	
53	GEOBIA 2014 Organizing Committee	5th GEOBIA 2014	2014-05-21 ~ 2014-05-24	331	
54	Chinese Culture University	TIDES 2014 The 9th Taipei International Digital Earth Symposium	2014-05-26 ~ 2014-05-30	336	
55	Diversified Business Communications	GEO Business Show 2014	2014-05-28 ~ 2014-05-29	342	
56	The Geoinformation Group	GeoDATA 2014 - Brussels	2014-06-03 ~ 2014-06-03	297	
57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Laboratories for Europe (AGILE)	17th AGILE Conference	2014-06-03 ~ 2014-06-06	831	

순번	주관	제 목	일시	조회	비고
58	○○○○○○소	UN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및 개별상담회 개최 안내	2014-06-02 ~ 2014-06-03	396	
59	OGRS	Open Source Geospatial Research and Education Symposium (OGRS)	2014-06-10 ~ 2014-06-13	392	
60	Beijing Prime Tabor Network Technology Limited Company	2014 World Geospatial Developers Conference(WGDC)	2014-06-11 ~ 2014-06-12	799	
61	○○○-○○○○○은행	해외진출 공동설명회: 아세안 신흥국 시장 진출전략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방안	2014-06-03 ~ 2014-06-03	370	
62	AfricaGEO Organising Committee	AfricaGEO 2014	2014-07-01 ~ 2014-07-03	314	
63	IGARSS & CSRS	IEE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S Symposium (IGARSS) & 35th Canadian Symposium on RS (CSRS)	2014-07-13 ~ 2014-07-18	355	
64	ESRI	Esri International User Conference 2014	2014-07-14 ~ 2014-07-18	1,018	
65	COMStar Computing Technology Institute	COM.Geo 2014	2014-08-04 ~ 2014-08-06	281	
66	○○, LX, ○○○○협회, ○○연구원외 1	2014 스마트국토엑스포	2014-08-25 ~ 2014-08-27	324	
67	University College Cork, HAS Univ., Univ. of Utrecht, etc.	EUGISES	2014-09-04 ~ 2014-09-07	283	
68	○○○○협회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14(GICC 2014)	2014-09-17 ~ 2014-09-19	1,118	
69	○○○○○진흥원	개도국 전자정부 초청연수 과정 안내	2014-10-20 ~ 2014-10-31	285	
70	○○○○○○○○○○협회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카자흐스탄 파견안내 (마감기한 : 9월 12일(금))	2014-10-06 ~ 2014-10-08	442	

순번	주관	제 목	일시	조회	비고
71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KOICA] 중소기업 대외무상원조(ODA)사업 사업참여 설명회	2014-10-07 ~ 2014-10-07	405	
72	○○○○○공단 ○○○○○○○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전략 공개 설명회	2014-10-17 ~ 2014-10-17	257	
73	KOTRA	[KOTRA]IT Inside China(시안-정저우-선전)참가업체 모집 안내	2014-11-23 ~ 2014-11-29	548	
74	LX대한지적공사, ○○○○○진흥원	2014 해외인사 초청세미나 결과보고	2014-08-25 ~ 2014-03-26	276	
75		2014 스리랑카 공간정보 로드쇼 관련 사전간담회 결과보고	2014-11-12 ~ 2014-11-12	281	
76		2014 공간정보 해외로드쇼 관련 민간기업 워크숍 결과보고	2014-10-23 ~ 2014-10-23	241	
77	대한지적공사, ○○○○○진흥원	2014 스리랑카 스마트 공간정보 로드쇼 결과보고	2014-12-08 ~ 2014-12-13	292	
78	불가리아 지적청	2015 FIG 상임위원회 개최	2015-05-17 ~ 2015-05-21	268	
79		2015 대한민국 해외진출종합대전(KOIF2015)	2015-06-17 ~ 2015-06-18	233	
80	Millennium Development Authority	가나 지형정보시스템 조달 및 수행 컨설턴트 모집 공고	2015-11-09 ~ 2015-11-30	241	
81	FIG 세계측량사연맹	FIG (세계측량사연맹) 상임위원회 개최	2016-05-02 ~ 2016-05-06	898	

4. 해외진출지원_지원사업_해외로드쇼

년도	장소	기간	주최(주관)	주요내용	비고
2013	베트남 하노이	2013-04-22 ~ 04. 25	○○○○부 (○○○○○○과 외 2)	- 현지 정부 및 주요 발주처 관계자 초청 - 민간 기업을 위한 현지동향 파악 및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 및 산업 시찰	
2014	스리랑카 콜롬보	2014.-12-08 ~ 12. 13	대한지적공사 ○○○○○○진흥원	- 현지 정부 주요 발주처 관계자 초청 정책·기술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연계	

5. 해외진출지원_지원사업_세미나/간담회

년도	행사명	장소	날짜	주요내용	비고
2013	공간정보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대한지적공사 ○○○○연구원	2013-12-23	-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별 해외사업지원 및 내년도 사업계획 소개 외	
2013	공간정보 해외진출지원 관련 사전간담회	○○라 IKP 타이페이실	2013-03-21	- 현지 로드쇼 상세일정 소개 - 로드쇼 본행사 관련 준비사항 및 지원제공사항 공유외	
2013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 워크숍	대한지적공사 대회의실	2013-02-27	- 2013 베트남 로드쇼 행사 소개 및 업체 질의응답 외	
2014	해외인사 초청세미나	서울 ○○스 컨퍼런스룸	2014-08-25	- 한 베트남 정부 간의 우호 관계 - 베트남 경제상황, 지리정보 관련 소개 및 한-베트남 경제협력 관례외	
2014	공간정보 글로벌 기술 공유 워크숍	서울○○플라자	2014-04-30	- 케냐 라무항 인근지역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신한항업) - 맵API 공공분야 적용 사례(삼아항업) 외	
2014	공간정보 해외로드쇼 관련 기업간담회	○○ IT타워 소강단 (○○○○○○진흥원)	2014-03-21	- 2014 해외로드쇼 개최 계획 공유 - 개최지 선정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외	

6. 해외진출지원_상담실_상담하기

순번	상담분야	제 목	공개여부	등록일	처리현황	조회수	비고
1	통번역	[투르크메니스탄] 지적정보시스템구축에 참여하려면 ??	공개	2012-01-04	답변	473	
2	자료수집	[네덜란드] 네덜란드 ITC post-doc	공개	2012-06-08	답변	864	
3	법률	[베트남] 업무협약체결요청	공개	2012-07-25	답변	524	
4	자료수집	진행사업 관련 문의	공개	2012-08-09	답변	505	
5	자료수집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대하여	공개	2012-10-30	답변	434	
6	통번역	해외네트워크 연결?	공개	2012-12-05	답변	548	
7	자료수집	캄보디아 지적 자료	공개	2012-12-28	답변	618	
8	해외진출	홈페이지 신설에 따른 상담게시글 이전	공개	2013-01-02	접수	537	
9	해외진출	한국형GIS수출을 위한 현지기관과의 project 공동개발	비공개	2013-10-20	답변	4	
10	해외진출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건학요청	공개	2013-11-01	답변	505	
11	해외진출	해외 공간정보 컨퍼런스 지원도 하시나요?	공개	2013-11-08	답변	469	
12	해외진출	해외 로드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개	2013-12-02	답변	448	
13	해외진출	공간정보 해외 현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개	2013-12-13	답변	420	
14	자료수집	해외 지적정보화 및 공간정보화 시장현황 자료 요청	공개	2014-01-10	답변	488	
15	해외진출	해외 시장 현황 조사	비공개	2014-01-10	답변	5	
16	해외진출	ADB 사이트를 통한 해외입찰 자료검색	비공개	2014-07-02	답변	2	
17	해외진출	방글라데시	공개	2015-01-22	답변	349	
18	해외진출	해외 공간정보 ODA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개	2015-06-30	답변	292	

7. 자료실_법률·정책

순번	제목	등록일	조회수	비 고
1	EU_공동체기관에 의한 회원국 공간정보와 서비스의 접근권에 관한 의회와 이사회 지침에 대한 위원회 규칙	2012-12-12	386	
2	남아프리카공화국-공간 데이터 인프라에 관한법	2012-12-12	411	
3	남아프리카공화국-전문적토지측량및기술적측량개정법	2012-12-12	385	
4	독일-공간계획법(GeROG)개정논의에있어공간계획의원칙	2012-12-12	465	
5	말레이시아-국가토지법	2012-12-12	431	
6	모로코-국가부동산보호, 측정, 지도작성기관설립법	2012-12-12	481	
7	몽골-토지법(몽골어)	2012-12-12	434	
8	몽골-토지법(번역본)	2012-12-12	400	
9	베트남-토지법	2012-12-12	466	
10	세르비아-공간계획 및 건설법	2012-12-12	416	
11	스페인-스페인의 사회기반시설과 지리정보에 관한 법률	2012-12-12	423	
12	오만-지리정보보호법	2012-12-12	405	
13	요르단-토지등록법	2012-12-12	396	
14	우크라이나-토지계획과 개발법	2012-12-12	497	
15	일본-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2012-12-12	466	
16	중국-토지조사조례(원문본)	2012-12-12	417	

순번	제목	등록일	조회수	비 고
17	중국-토지조사조례(한글본)	2012-12-12	398	
18	캄보디아-지적계획및토지등기부를 신설하기위한 절차의 시행에 관한지시	2012-12-12	401	
19	캐나다-원격탐사우주시스템법	2012-12-12	444	
20	케냐-토지법	2012-12-12	387	
21	페루-국가광업지적법	2012-12-12	400	
22	과테말라-부동산세법	2013-02-14	379	
23	남아프리카공화국-토지규정및그부속규정에관한법	2013-02-14	385	
24	도미니카공화국-부동산등록에 관한법	2013-02-14	383	
25	독일-토지구획법	2013-02-14	403	
26	두바이-토후국내 토지등록에 관한 법	2013-02-18	403	
27	미국-미시간주 토지분할법	2013-02-18	383	
28	요르단-측량업무규정과 부동산사무실법	2013-02-18	435	
29	요르단-토지지정, 측정, 가격평가법	2013-02-18	382	
30	우크라이나-토지감정법	2013-02-20	396	
31	우크라이나-토지법개정	2013-02-20	339	
32	일본-토지가옥조사사법	2013-02-20	367	

순번	제 목	등록일	조회수	비 고
33	일본-토지구획정리법	2013-02-20	428	
34	중국-기술측량조례	2013-02-20	379	
35	중국-중화인민공화국측량법(영문)	2013-02-22	427	
36	중국-중화인민공화국측량법(중문)	2013-02-22	467	
37	중국-토지관리법 실시조례	2013-02-22	423	
38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한글)	2013-02-22	392	
39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중문)	2013-02-22	426	
40	카자흐스탄-부동산과 그 거래의 국가등기법	2013-02-25	483	
41	카자흐스탄-토지법개정	2013-02-25	441	
42	케냐-토지통합법	2013-02-25	1,046	
43	크로아티아-토지등록법	2013-07-01	430	
44	요르단-토지등록세법	2013-11-04	416	
45	캐나다-토지측량인규정	2013-11-04	471	
46	러시아-국가 측량 감독 수행에 관한 러시아 연방 정부령	2013-11-04	490	
47	몽골-광물자원법	2013-11-04	379	
48	일본-국토지리원조직규칙	2013-11-04	703	
49	몽골-토지법(일부 개정본)	2013-11-04	651	

8. 자료실_진출지원자료

순번	제목	등록일	조회수	비 고
1	외국의 3차원 지적 연구동향 관리자	2012-12-05	525	
2	선진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연구	2012-12-05	1,042	
3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시장조사	2012-12-05	750	
4	NSDI 구축에 따른 해외 지적모형 개발 동향 연구	2013-06-27	578	
5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lanning in Nigeria(a spatial demension)	2013-07-02	565	
6	몽골 토지법 연구	2013-11-04	528	
7	IBRD 프로젝트 입찰 가이드라인	2013-11-18	464	
8	달라진 EU 공공조달정책,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로	2013-11-18	428	
9	[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3호 백서	2013-12-24	515	
10	[○○○○○] 중소기업의 ODA사업 참여 설명회 자료 (제4회 원조조달설명회)	2014-02-27	546	
11	[한국수출입은행] “EDCF를 지렛대로 개도국 인프라에 참여하세요”	2014-02-27	599	
12	[○○○○○] 유사사업 실적증빙 방법 개선사항 안내	2014-03-14	715	
13	[○○○○○] 기술평가기준 개정 안내 (2014.7.29. 개정)	2014-08-04	707	
14	[○○○○○] 2016년 정부부처 제안사업 검토 결과	2015-01-23	392	
15	[○○부] 중동에 이은 '중남미 봄' 통해 '제2 한강의 기적' 기대	2015-04-28	373	
16	○○○銀, 브라질서 거미줄망 금융 네트워크 구축	2015-04-30	261	
17	[○○○협회] 프로젝트 발굴 및 업계 수주지원	2015-05-15	275	

순번	제목	등록일	조회수	비 고
18	중미시장을 놓고 투자 경쟁 벌이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기업	2015-06-09	240	
19	사물인터넷, 캐나다에서도 꿈틀	2015-06-17	263	
20	IBRD, 몰코 지역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2015-07-20	363	
21	제2회 민간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발표자료 제공	2015-08-25	355	
22	경제제재 1년, 러시아 시장 새롭게 접근하자	2015-09-08	196	
23	세계은행, 모로코에 대해 총 2억5천195만 달러 융자 및 무상원조를 시행	2015-09-09	205	
24	세계은행의 수리남 국가발전 지원전략	2015-09-09	202	
25	IBRD, 모로코 지역 관개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2015-09-09	240	
26	서유럽 진출 관문인 비셰그라드(V4) 국가로 진출하기	2015-09-22	525	
27	인도네시아 경제활성화 정책 발표, 우리 기업 영향은?	2015-09-22	276	
28	케냐 제조업 투자 진출, 지금이 기회	2015-09-22	465	
29	칠레의 농업혁신시스템 : 액션플랜 2030	2015-12-31	151	
3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해 알아보시다.	2015-12-31	174	
31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해외사업 전문용어 해설 !!	2015-12-31	196	
32	FIG (세계측량사연맹)에서 발간한 주요이슈 보고서 1탄	2015-12-31	168	
33	FIG (세계측량사연맹)에서 발간한 주요이슈 보고서 2탄	2015-12-31	167	
34	FIG (세계측량사연맹)에서 발간한 주요이슈 보고서 3탄	2015-12-31	191	

순번	제 목	등록일	조회수	비 고
35	에티오피아 유관기관연락처	2016-06-30	85	
36	에티오피아 출장시 유의 및 참조사항	2016-06-30	99	
37	에티오피아 유관기관연락처(수정)	2016-06-30	93	
38	2015_국가정보튀니지	2016-06-30	152	
39	2015_국가정보_모잠비크	2016-06-30	224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문책요구

제 목 에티오피아 사업타당성 용역 검수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문책 대상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국토정보직 6급 장○○

문책 종류 주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 ○○○○○처(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에티오피아 토지 행정개선 및 통합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 (이하 “타당성 용역”이라 한다.)을 (주)○○○○○○○ 컨소시엄과(이하 “계약 상대방”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으며 2017. 2. 16. 검수를 완료 하였다.

1.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

타당성 용역의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자가 “에티오피아 토지관리 현황분석, 목표사업 사전타당성 분석, 프로젝트 추진계획 작성” 방안의 제안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경제성·정책적·기술적 분석을 통해 목표사업의 사전타당성을 제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계약상대방은 제안서에 순현재가치·내부수익률·비용편익분석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술적합성·실현가능성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사전 타당성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은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비용편익분석·기술적합성·실현 가능성등의 방법으로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를 용역완료보고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용역 검수와 관련된 사항

「계약규정」 제12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를 할 때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를 통해 확정된 과업을 계약 상대방이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사업타당성 용역의 완료보고서는 순현재가치·내부수익률·비용편익분석·기술적합성·실현 가능성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불합격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에티오피아 사업타당성 검사·검수를 소홀히 하여 계약상대방이 일부과업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검수를 승인하였고 2017. 2. 28. 용역대금 지급을 ○○처에 요청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에티오피아 사업타당성 용역 검사·검수를 소홀히 한 국토정보직 6급 장○○을 「직원징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책처분(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가입비 회수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 ○○○○○처(구 대한지적공사 ○○○○부 및 ○○○○부,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주식회사 ○○○○○(대표 조○○)과 공동 참여(컨소시엄)를 통해 ○○○○○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추진하는 「방글라데시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하 “F/S 용역”이라 한다)에 따른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은행에서는 공사와의 ‘F/S 용역’ 계약을 위하여 협조문서(지원 13P-302, 2013. 8. 14.)를 통해 계약서를 날인한 후 공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동기부등본, 계약보증서, 대리인 위임장(재직증명서), 참여 인력 보안각서 및 손해배상공제증권 등 7종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공사는 추가 요청자료 중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엔지니어링 ○○조합에 정조합원 가입비를 납부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방글라데시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현황

부서명: 글로벌사업처

(단위: 원)

구분	일자	주요내용	비고
제안서 제출	2013. 7. 4.	• 대한지적공사와 주식회사 ○○○○○ 컨소시엄	
용역 계약체결	2013. 8. 16.	• 계약금액: 508,300,000원 • 계약기간: 2013. 8. 16. ~ 2014. 1. 22. (단, 과업수행기간: 2013. 8. 23. ~ 2014. 1. 22.) • 계약기간 연장: 2013. 8. 16. ~ 2014. 4. 22.(2차 연장) • 고용주: ○○○○○은행 • 고용인: 대한지적공사(지분 80%) 406,640,000원 • 고용인: 주식회사 ○○○○○(지분 20%) 101,660,000원	○○○○부-2344 (‘13.8.19.) 계약체결보고
정조합원 가입	2013. 8. 22.	• 가입금액: 9,438,180원 • 조합원번호: 3245 • 가입사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	○○○○부-2405 (‘13.8.22.)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	2013. 8. 22.	• 가입금액: 2,259,000원 • 가입기간: 2013. 8. 22. ~ 2016. 8. 20. • 증권번호: 제 201308-33-100042-00호	○○○○부-2408 (‘13.8.22.)
최종 성과물 제출 용역 완료	2014. 4. 22.	• 사업타당성보고서 제출 (국문보고서 10부 CD 2매 / 영문보고서 20부 CD 4매)	○○○○부-722 (‘14.4.22.)

※ ○○○○○처(구 ○○○○○부) 제출자료 재구성

공사는 위 [표] 현황과 같이 “방글라데시 디지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현황”과 같이 방글라데시 정국 불안(총선, 폭력사태)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⁹⁾하여 ‘F/S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은행에 2014. 4. 22.자로 최종 사업타당성보고서 등 성과물을 제출함으로써 ‘F/S 용역’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공사는 ‘F/S 용역’ 계약 체결 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을 발급 받고자 한시적으로 납부한 엔지니어링 ○○조합 정조합원 가입비 9,438,180원을

9) 계약기간 연장 1차: 2013. 8. 16.~2014. 3. 22.(○○○○부-113, 2014. 1. 21.) ○○○○○은행 승인
계약기간 연장 2차: 2013. 8. 16.~2014. 4. 22.(○○○○부-516, 2014. 3. 21.) ○○○○○은행 승인

‘F/S 용역’ 계약 종료 후 또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후속 사업이 연속하여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조합 정조합원 가입비 회수내역을 확인한 바,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F/S 용역’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조합 정조합원 가입비 9,438,18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사업 관련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부, ○○○○부, ○○○○실,
○○○○○처, ○○○○○처, ○○○○실, ○○○○처, ○○실(○○1부,
○○2부), ○○○○○○원(○○○○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급여 등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규정」 제6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에 따르면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은 별표 4,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초과 근무한 직원(3급 이상 보직자 제외)에게는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각각 지급할 수 있으며, 직급별 지급한도 시간수는 3급: 10시간, 4급: 14시간, 5급: 16시간, 6급: 20시간, 7급(갑, 을): 20시간, 기능직: 12시간, 보조직 2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과근무 산정기준」 7. 초과근무 산정시간 라에 “초과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초과 근무한 총시간에서 직급별 기본급에 편입된 시간(3급: 13, 4급: 13, 5급: 14, 6급: 17, 기능직: 15)을 공제한 후 「급여규정」에서 정한 제한시간 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기본급에 편입된 시간공제에 대해서는 2007. 6. 1. 이전 입사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매월 말일 기준 특근명령부를 근거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출퇴근기록기 근태기록을 점검하여 착오 지급분에 대하여는 즉시 정산 조치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 근태담당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개인별 초과근무 현황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특근명령부를 근거로 개인별 초과 근무현황을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표] 초과근무수당 착오 지급 현황

(금액단위: 원)

지급 월	소속	직급	성명	입사일자	기준시간	인정부여	특근시간	편입시간	요 지급시간	기 지급시간	회수금액	비 고
'16. 1월	○○○○실	7급	유○○	2012.04.23	20시간	10시간	8시간	0시간	18시간	20시간	32,450	2시간 과 지급
'16. 1월	○○○○	4급	김○○	1990.04.04	27시간	10시간	16시간	13시간	13시간	14시간	33,480	1시간 과 지급
'16. 2월	○○○○실	5급	성○○	1997.04.21	30시간	10시간	19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31,760	1시간 과 지급
'16. 2월	○○○○○처	4급	조○○	1994.03.18	27시간	10시간	13시간	13시간	10시간	14시간	136,730	4시간 과 지급
'16. 2월	○○○○실	7급	유○○	2012.04.23	20시간	10시간	9시간	0시간	19시간	20시간	16,230	1시간 과 지급
'16. 2월	○○○○○처 (○○본부)	5급	김○○	2005.07.01	30시간	9시간	16시간	14시간	11시간	12시간	26,130	1시간 과 지급
'16. 4월	○○○○부	5급	변○○	2005.04.11	30시간	10시간	15시간	14시간	11시간	16시간	130,220	5시간 과 지급
'16. 4월	○○○○○처	5급	임○○	2015.05.15	16시간	10시간	2시간	0시간	12시간	16시간	124,840	4시간 과 지급
'16. 4월	○○○○○처	5급	장○○	1997.06.02	30시간	10시간	19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31,170	1시간 과 지급
'16. 5월	○○○○○처	5급	김○○	1999.07.19	30시간	10시간	5시간	14시간	1시간	2시간	30,280	1시간 과 지급
'16. 5월	○○○○○처	6급	문○○	2010.06.01	20시간	10시간	9시간	0시간	19시간	20시간	21,960	1시간 과 지급
'16. 5월	○○○○실	보조 인력	이○○	2016.01.01	20시간	10시간	8시간	0시간	18시간	20시간	24,480	2시간 과 지급
'16. 6월	○○○○부	5급	변○○	2005.04.11	30시간	10시간	19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26,340	1시간 과 지급
'16. 6월	○○○○○처	4급	조○○	1994.03.18	27시간	10시간	16시간	13시간	13시간	14시간	34,180	1시간 과 지급
'16. 7월	○○○○○처	4급	조○○	1994.03.18	27시간	9시간	16시간	13시간	12시간	14시간	68,360	2시간 과 지급
'16. 7월	○○○○○처	5급	김○○	1999.07.19	30시간	10시간	13시간	14시간	9시간	12시간	91,720	3시간 과 지급
'16. 8월	○○○○부	6급	이○○	2007.04.23	37시간	10시간	26시간	17시간	19시간	20시간	25,060	1시간 과 지급
'16. 8월	○○○○○처	5급	강○○	1998.05.11	30시간	10시간	18시간	14시간	14시간	16시간	62,340	2시간 과 지급
'16. 8월	○○○○부 (○○○○원)	5급	이○○	2005.04.11	30시간	10시간	19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26,920	1시간 과 지급
'16. 8월	○○○○○처	5급	유○○	2005.04.11	30시간	10시간	19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26,920	1시간 과 지급
'16. 8월	○○○○○처	3급	이○○	1996.07.31	23시간	10시간	12시간	13시간	9시간	10시간	35,900	1시간 과 지급
'16. 8월	○○○실	7급	양○○	2014.06.16	20시간	10시간	9시간	0시간	19시간	20시간	19,970	1시간 과 지급
'16. 9월	○○○○○처	4급	조○○	1994.03.18	27시간	10시간	16시간	13시간	13시간	14시간	34,470	1시간 과 지급

'16.10월	○○○	3급	김○○	1992.05.11	23시간	10시간	12시간	13시간	9시간	10시간	37,070	1시간 과 지급
'16.11월	○○○○○	6급	문○○	2010.06.01	20시간	10시간	7시간	0시간	17시간	20시간	65,870	3시간 과 지급
'17. 1월	○○○○○	5급	변○○	2005.04.11	30시간	10시간	17시간	14시간	13시간	16시간	79,020	3시간 과 지급
'17. 1월	○○○○○	5급	강○○	1998.05.11	30시간	10시간	17시간	14시간	13시간	16시간	93,510	3시간 과 지급
'17. 1월	○○○○○	5급	유○○	2005.04.11	30시간	10시간	18시간	14시간	14시간	16시간	53,840	2시간 과 지급
'17. 2월	○○○○○	3급	이○○	1994.03.18	23시간	10시간	2시간	13시간	0시간	8시간	296,550	8시간 과 지급
'17. 2월	○○○○○	5급	고○○	2000.06.01	30시간	8시간	13시간	14시간	7시간	9시간	63,300	2시간 과 지급
'17. 2월	○○○○○	5급	김○○	1999.07.19	30시간	10시간	15시간	14시간	11시간	13시간	61,150	2시간 과 지급
'17. 2월	○○○○○	6급	문○○	2010.06.01	20시간	10시간	8시간	0시간	18시간	20시간	43,910	2시간 과 지급
계			32명								1,886,130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특근명령부를 근거로 개인별 초과 근무현황을 확인하지 않아 32명에게 초과근무수당 1,886,130원을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그 결과 「급여규정」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을 준용하지 않는 등 보수지급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부장 등 7개 부서장 및 ○○○○○원장 ○○○○실장)은 과다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886,130원을 즉시 반납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월 근태마감 처리 시 특근명령부를 근거로 개인별 초과 근무시간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부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급여 등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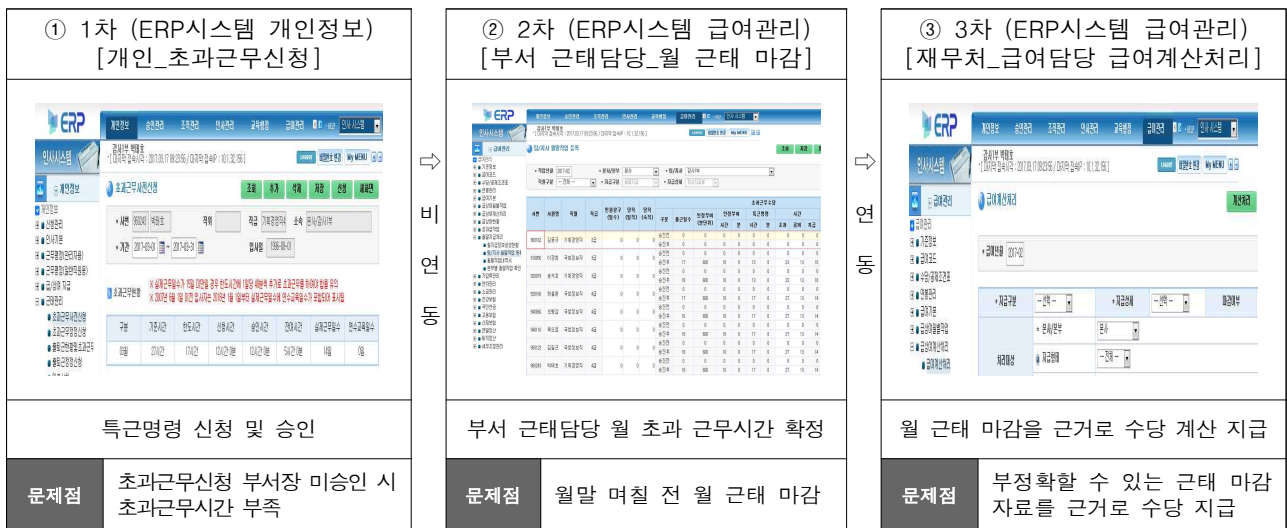
「급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4,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초과 근무한 직원(3급 이상 보직자 제외)에게는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각각 지급”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 산정기준」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매월 말일 기준 특근명령부를 근거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출퇴근기록기 근태기록을 점검하여 착오 지급분에 대하여는 즉시 정산 조치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 근태담당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개인별 초과근무 현황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7년 예산집행지침의 나. 제수당 7)에 “초과근무수당은 당월 말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월 초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공사에서는 현재 [표 1] 현황과 같이 초과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절차를 보면 ① 특근명령부를 근거로 개인별 초과 근무현황을 확인하여 ② ERP시스템(급여관리)_월말지급처리_팀/지사 월말작업 등록에서 초과근무시간을

확정한 후 ③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을 해당 월말에 지급하기 위하여 당월 말일 며칠 전에 초과근무시간을 확정하고 있어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수당 지급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 절차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근명령부 초과근무시간을 수당 계산과 직접 연동시키고, 수당 지급시기를 월말이 아닌 익월 초로 변경함으로써 월말일자 초과근무시간까지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지급 절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관계부서 및 관련자 의견 ○○○○부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관련부서 및 관련자¹⁰⁾는 감사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후일 관련 지침개정 및 ERP시스템(급여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수당 지급절차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0) 관련부서: ○○○○실(복무), ○○○○처(급여규정), ○○처(보수), ○○○○부(예산집행지침), 본부 1개소(○○○○처)
관련자: ERP(급여관리) 개발실 개발자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부장)은 초과근무수당이 특근명령부 초과근무시간과 상이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지침」에 명시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일을 당월 말일에서 익월 초로 변경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공익근무 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70호)에 따라 공사 소속기관에 배정되어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병역법」 제27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제1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¹¹⁾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¹²⁾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별표 1] 공공기관 등의 범위 현황과 같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사회복무요원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現)공사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1) 2013. 11. 20. 타법개정에 따라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명칭변경: (舊)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12) 舊)병역법 시행령 35조의2의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명칭 재정기관의 범위로 되어 있음.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의 범위 기관”에서 200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17년간 제외 되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표] 「병역법 시행령 개정 연혁 현황

구분	병역법 시행령 개정일	개정근거	개정내용[별표 1]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1999년	1999. 4. 1.	국방부령 제496호	재정지원기관의 범위(제35조의2관련)	신설 舊)대한지적공사 포함
2000년	2000. 2. 3.	국방부령 제511호	재정지원기관의 범위(제35조의2관련)	舊)대한지적공사 포함
2001년	2001. 5. 2.	국방부령 제525호	재정지원기관의 범위(제35조의2관련)	舊)대한지적공사 포함
	2001. 5.19.	국방부령 제527호	재정지원기관의 범위(제35조의2관련)	舊)대한지적공사 포함
	2001. 9.21.	국방부령 제530호	재정지원기관의 범위(제35조의2관련)	舊)대한지적공사 포함
2002년	2002.10.23.	국방부령 제541호	재정지원기관의 범위(제35조의2관련)	舊)대한지적공사 제외

※ 「병역법 시행령」 개정 연혁 자료 재구성

그 결과 現)공사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대하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등에 부합 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지침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 의견 ○○○○실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공사에서 시행 중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대하여 2002. 10. 23. 국방부령 제541호에 따라 재정지원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에 관련지침을 즉시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대하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등에 부합 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지침 폐지를 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35조의2관련)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35조 관련)		
舊)재정지원기관의 범위(제35조의2관련) <2000. 2. 3. 개정>	舊)재정지원기관의 범위(제35조의2관련) <2002. 10. 23. 개정>삭제	現)공공기관 등의 범위 <삭제>
1) 한국여성개발원 2) 한국법제연구원 3) 한국보훈복지공단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 5)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6)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7)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8) 광복회 9) 대한민국상이군경회 10)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11) 4·19혁명부상자회 12) 4·19혁명희생자유족회 13) 한국소비자보호원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한국개발연구원 16) 한국조세연구원 17) 민족통일연구원 18) 재외동포재단 19) 한국국제협력단 20) 한국강생보호공단 21) 대한법률구조공단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성폭력상담소 24) 국방과학연구소 25) 한국국방연구원 26) 전쟁기념사업회 27)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8) 군인공제회 29)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0) <u>대한지적공사(2002.10.23.제외)</u> 31) 한국소방검정공사 32) 한국소방안전협회 33) 한국행정연구원 3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7) 한국교육개발원 3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0) 대한교원공제회 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42) 한국학술진흥재단 4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44) 한국사학진흥재단 45) 서울대학교병원 46) 경북대학교병원 47) 전남대학교병원	1) 한국여성개발원 2) 한국법제연구원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5)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7) 광복회 8) 대한민국상이군경회 9)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10) 4·19혁명부상자회 11) 4·19혁명희생자유족회 12) 한국소비자보호원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한국개발연구원 15) 한국조세연구원 16) 통일연구원 17) 재외동포재단 18) 한국국제협력단 19) 한국강생보호공단 20) 대한법률구조공단 2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국방과학연구소 23) 한국국방연구원 24) 전쟁기념사업회 2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6) 한국행정연구원 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8)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0) 한국교육개발원 3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2) 한국학술진흥재단 3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4) 한국사학진흥재단 35) 서울대학교병원 36) 경북대학교병원 37) 전남대학교병원 38) 부산대학교병원 39) 전북대학교병원 40) 충남대학교병원 41) 충북대학교병원 42) 경상대학교병원 43) 강릉대치과병원 4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6) 한국교육방송원 4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영 제47조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 공기업 1) 대한석탄공사 2) 부산항만공사 3) 한국감정원 4) 한국관광공사 5) 한국광물자원공사 6) 한국석유공사 7) 한국수자원공사 8) 한국전력공사 9) 한국조폐공사 10) 한국철도공사 11)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준정부기관 1) 공무원연금공단 2) 교통안전공단 3) 국립공원관리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공단 6) 근로복지공단 7) 기술신용보증기금 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독립기념관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2) 선박안전기술공단 13) 신용보증기금 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 중소기업진흥공단 17) 한국가스안전공사 18) 한국과학창의재단 19) 한국광해관리공단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 한국농어촌공사 23) 한국디자인진흥원 24) 한국문화예술회관진흥재단 2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6) 한국산업단지공단 27) 한국산업인력공단 28) 한국소비자원 29) 한국무역보험공사 3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1) 한국시설안전공단

48) 부산대학교병원	4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2) 한국에너지공단
49) 전북대학교병원	4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3) 한국연구재단
50) 충남대학교병원	50) 한국과학기술원	3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1) 충북대학교병원	51) 광주과학기술원	35) 한국인터넷진흥원
52) 경상대학교병원	52) 한국원자력연구소	3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3) 강릉대치과병원	5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7) 한국정보화진흥원
5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8) 한국주택금융공사
5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9) 한국철도시설공단
56) 한국교육방송원	56) 한국기계연구원	4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57) 한국화학연구원	41) 한국환경공단
5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영 제47조제5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
59) 한국과학기술원	59) 한국과학재단	
60) 광주과학기술원	6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4.19민주혁명회
61) 원자력연구소	61)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강원대학교병원
63) 한국자원연구소	63) 한국인삼연구초연구원	4) 강원도재활병원
6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4) 한국과학문화재단	5) 경기도교육연구원
65) 한국기계연구원	65) 독립기념관	6) 경기도청소년여영장
66) 한국화학연구원	66) 영화진흥위원회	7) 경북대학교병원
67) 에너지기술연구소	6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8) 경상대학교병원
68) 한국과학재단	68) 영상물등급위원회	9) 광주과학기술원
69) 한국항공우주연구소	69) 한국청소년개발원	10) 광복회
70) 대덕전문연구단지	70)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1) 김해시차세대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7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1) 대한체육회	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72) 한국인삼연구초연구원	72) 방송문화진흥회	13) 국립중앙의료원
73) 한국과학문화재단	73) 언론중재위원회	14) 국방과학연구소
74) 한국방송광고공사	7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5) 당진시자원봉사센터
7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6) 독립기념관	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77) 영화진흥공사	77)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8) 대한민국독립유공자 추모 기념사업회
7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78) 에너지관리공단	1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79) 종합유선방송위원회	79) 중소기업진흥공단	20) 대한민국전통물경유족회
80) 방송위원회	80) 한국산업인력공단	21) 대한법률구조공단
8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81) 에너지경제연구원	22) 대한적십자사
82) 한국청소년개발원	82) 산업연구원	23) 대한체육회
8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8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4) 물망초학교
84) 대한체육회	84) 한국디자인진흥원	25)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85) 방송문화진흥회	85) 한국가스안전공사	26) 방송문화진흥회
86) 언론중재위원회	86) 한국수출보험공사	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8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8) 부산대학교병원
8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88)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9)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30) 서산시자원봉사센터
90) 한국식품개발연구원	90) 한국전산원	31) 새마을운동중앙회
91) 한국지역난방공사	9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2) 소프트웨어공제조합
92) 에너지관리공단	9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33) 서울대학교병원
93) 중소기업진흥공단	93) 소프트웨어공제조합	34) 서울보라매병원
94) 한국산업인력공단	94) 국민연금관리공단	35)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95) 에너지경제연구원	95) 국민건강보험공단	36)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96) 산업연구원	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7) 서울장애인치과병원
9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7) 한국한의학연구원	38)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98) 산업디자인진흥원	98) 한국자원재생공사	3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99) 한국가스안전공사	99) 환경관리공단	40) 안양문화예술재단
100) 한국전기안전공사	100) 국립공원관리공단	41)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1) 한국수출보험공사	10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2) 산업기술정보원	102) 근로복지공단	43) 영등포문화재단
103)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03) 한국산업단지공단	44) 예술의전당
104) 한국정보보호센터	10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5) 오산물항기스포츠클럽
105) 한국전산원	105) 한국노동연구원	46) 울산과학기술원
106) 정보통신공사협회	106) 한국노동교육원	4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7)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07) 부산교통공단	48) 인천문화재단
108)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0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9) 장애인아학협의회
109) 국민연금관리공단	109) 시설안전기술공단	50) 전남대학교병원
110)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10) 국토연구원	51) 전남여성플라자
111) 의료보험연합회	111) 교통개발연구원	52) 전북대학교병원
1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3) 전쟁기념사업회
113) 한국한의학연구소	11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4) 한국자원재생공사	114) 한국해양연구원	55) 정부법무공단
115) 환경관리공단	1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6) 제주권역재활병원
116) 국립공원관리공단	11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7) 제주대학교병원
1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7) 선박검사기술협회	58) 종로문화재단
118) 근로복지공단	118) 한국어학협회	59) 주택관리공단
119) 한국산업단지공단	119) 4.19혁명공로자회	60) 중소기업중앙회
12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20) 한국국제교류재단	6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21) 한국노동연구원	121) 강원대학교병원	62) 중앙치매센터
122) 한국노동교육원	122) 대한적십자사	63) 충남대학교병원
123) 한국공항공단	123) 대한결핵협회	64) 충북대학교병원
124) 교통안전공단	1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5) 통일연구원
125) 부산교통공단	1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6)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126)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12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7) 한국고전번역원
12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27) 한국천문연구원	68)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8) 시설안전기술공단	128) 한국전기연구원	6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9) 국토개발연구원	129) 예술의 전당	70) 한국과학기술원
130) 교통개발연구원	130)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1) 건설기술연구원	131) 산재의료관리원	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3) 한국교육방송공사
13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3) 정동극장	74) 한국교통연구원
134) 한국해양연구소	134) 지방문화원	75) 한국국방연구원
1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5) 한국군사문제연구원	76) 한국국제교류재단
136) 한국항만연수원		77) 한국국제협력단
13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38) 선박검사기술협회		79) 한국기계연구원
139) 한국어학협회		8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4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1) 한국노동연구원
141) 한국산업안전공단		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비고 : 재정지원기관에 부설기관이		8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설기관을 포		84) 한국문화원연합회
함한다.		8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86) 한국법제연구원
		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8)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89) 한국사학진흥재단
		9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9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9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3) 한국식품연구원
		9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95) 한국어촌어항협회
		9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7) 한국원자력연구원
	98) 한국원자력의학원
	99) 한국자유총연맹
	100)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10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10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03) 한국전기연구원
	10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0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6) 한국조세연구원
	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0)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3) 한국학중앙연구원
	114) 한국한센복지협회
	115) 한국한의학연구원
	1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17) 한국해운조합
	118) 한국행정연구원
	1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0) 한국화학연구원
	12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2)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23) 한국천문연구원
	12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25) 한마음혈액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국외출장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해외사업 수행, 국제회의 및 행사, 국제세미나 논문발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을 시행하고 있다.

1. 국외출장 현황관리 부적정

「국외출장 및 항공마일리지 업무처리요령 2016」 ⑩국외출장 현황관리에 따르면 “국외출장 시행부서는 국외출장 현황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경영지원실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외출장 시행부서는 국외출장 현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면 ○○○○실은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국외출장 시행부서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외출장 현황관리 대장 [표 1] 현황과 같이 분기별로 제출 하지 않았으며, ○○○○실 또한 분기별로 국외출장 현황관리대장 작성·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표1] 국외출장 현황관리대장

순번	업무 분야	출장명/출 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출 장 자			금액 (원)	사전심사 실시여부	결과보고 등록	경영 공시	항공마일리지 등록
			국가	도시	시작일	종료일	소속	직급	성명					

그러나 ○○○○실에서는 시행부서의 국외출장이 있을 시 사전심사를 하면서 국외출장 현황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총괄 관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의 「국외출장 및 항공마일리지 업무처리요령」을 현재의 효율적인 운영 프로세스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공사는 「국외출장 지침」 제11조 제1항 “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출장, 연수, 시찰, 훈련 등을 포함한 모든 국외출장)을 실시하고, 국외출장 종료 후 3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출장자는 출장 종료 후 3주 이내에 출장개요, 일정, 활동내용, 습득한 정보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계획서와 함께 사내 인트라넷에 등록하여 관련부서와 업무를 공유하여야 한다.

[표2]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등록 현황

연도	계	등록		지연등록 사유
		기한 내	기한 초과	
합계	42	31	11	
2016년	40	30	10	-후속업무 처리: 8 -직계가족 별세: 1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1
2017년	2	1	1	-후속업무 처리: 1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2016. 1. 1.부터 현재까지 [표 2] 현황과 같이(세부 내역은 [붙임1] 참조)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3주 이내에 11건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등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연등록 사유를 검토하면 해외사업의 경우 업무 특성상 출장을 다녀온 후 시급하게 처리할 후속업무 등을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사의 「국외출장 지침」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¹³⁾」_대통령령 제27822호」과 같이 국외출장 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여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지연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 의견 ○○○○실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국외출장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국외출장 현황관리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지연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출장 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3) 제13조의6(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①항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등은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등록 현황

순번	국외출장 귀국일	결과보고 등록일	소요 일수	출장목적	기한내 등록	지연등록 사유
1	2016-01-18	2016-02-18	31	○○○○ EDCF 사업 국외출장 계획(안)	X	후속업무 처리 (국외출장)
2	2016-02-05	2016-02-29	24	○○○○, ○○○ EDCF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안)	X	후속업무 처리 (사업제안서작성)
3	2016-02-27	2016-03-17	19	○○○○○ 주요 3개국 대상 정책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추진계획(안)	○	
4	2016-02-25	2016-03-28	32	○○○ WB 사업 관련 국외출장 계획(안)	X	후속업무 처리 (추가사항확인)
5	2016-02-26	2016-03-15	18	○○○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관련 국외출장 계획(안)	○	
6	2016-03-22	2016-03-30	8	○○○○○○○ 국외출장 계획(안)	○	
7	2016-03-19	2016-04-08	20	2016 ○○○○ 연례회의 참석 출장 계획(안)	○	
8	2016-03-26	2016-04-15	20	○○○○○ EDCF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안)	○	
9	2016-04-23	2016-05-11	18	○-○ 국토정보 정책협의 국외출장 계획(안)	○	
10	2016-04-30	2016-05-09	9	○○○○○정책지원사업추진 2차 사전조사(○○○○○) 국외출장 계획(안)	○	
11	2016-05-04	2016-05-25	21	○○○, ○○○○ 유·무상 연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안)	○	
12	2016-06-04	2016-06-13	9	○○○○○○○ 국외출장 계획(안)	○	
13	2016-05-18	2016-05-26	8	○○○○○○○ 국외출장 계획(안)	○	
14	2016-05-29	2016-06-10	12	○○○○○ 정책지원사업 추진 및 VIP 순방에 따른 ○○○○○○ 국외출장 계획(안)	○	
15	2016-06-04	2016-06-27	23	「○○○ 인프라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계획(안)	X	직계가족 별세
16	2016-06-17	2016-06-27	10	○○○○ 및 ○○○○○○ EDCF 사업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안)	○	
17	2016-06-18	2016-06-24	6	○○○ CSR 기술학교 운영을 위한 국외출장계획(안)	○	
18	2016-06-18	2016-06-27	9	○○○ ○○○ 워크숍 및 CSR사업관련 국외출장 계획(안)	○	
19	2016-06-18	2016-07-19	31	○○○○CSR및○○○○○주요3개국 정책지원사업 출장 계획(안)	X	후속업무 처리 (추가사항확인)
20	2016-08-13	2016-08-25	12	○○○○ ○○○ 국외출장 계획(안)	○	
21	2016-07-30	2016-08-05	6	○○○○ ○○○○○○ 국외출장(○○○○○ 주요 3개국 국토인프라 구축 정책지원사업)	○	
22	2016-08-12	2016-08-23	11	2016 ○○○○○○○○ 지적 심포지엄 참석 국외 출장 계획	○	

순번	국외출장 귀국일	결과보고 등록일	소요 일수	출장목적	기한내 등록	지연등록 사유
23	2016-08-12	2016-08-17	5	○○○○○ 정보화 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	○	
24	2016-08-31	2016-09-12	12	○○○○○○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구축 사업계약조건 협상을 위한 국외출장계획	○	
25	2016-09-30	2016-10-27	27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보고	X	후속업무 처리 (사업제안서작성)
26	2016-10-01	2016-10-27	26	○○○○○ EDCF 사업추진 국외출장 계획(안)	X	후속업무 처리 (국내중간보고,국외 출장)
27	2016-10-30	2016-11-15	16	○○○○ 2개국(○○○, ○○○○○) 국외출장 계획(안)	○	
28	2016-10-22	2016-11-07	16	○○ 해비타트 컨퍼런스 III 참석 출장 계획	○	
29	2016-10-22	2016-11-04	13	○○○○ 원격탐지 컨퍼런스 참석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보고	○	
30	2016-11-05	2016-11-21	16	○○○○ ○○○ 국외출장 계획 (4차 국외출장)	○	
31	2016-10-21	2016-11-03	13	제10회 국제지적학회 ○○총회 참석계획	○	
32	2016-11-14	2016-11-21	7	○○○○ IDB 사업 국외출장 계획	○	
33	2016-11-11	2016-12-13	32	○○○○ 토지정보화 사업추진 및 공간정보 로드쇼 사전협의를 위한 국외출장 계획 보고	X	후속업무 처리 (국외출장)
34	2016-11-12	2016-11-28	16	○○○○○EDCF사업및다가시부동산과세지도구 축사전타당성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국외출장계획	○	
35	2016-11-19	2016-12-12	23	○○○○○○ NGIS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출장소 개소관련 국외출장 계획	X	후속업무 처리 (추가사항확인)
36	2016-11-21	2017-02-12	83	개발도상국 3개국 컨설팅 사업 추진에 따른 중남미 출장	X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37	2016-12-01	2016-12-22	21	2016 ○○○○ 공간정보 로드쇼 국외출장 계획 보고	○	
38	2016-12-02	2016-12-14	12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국외출장	○	
39	2016-12-16	2016-12-22	6	○○○○ 및 ○○○○○ 사업 최종보고회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	
40	2016-12-17	2016-12-28	11	○○○○○○ NGIS 구축 사업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관련 국외출장 계획	○	
41	2017-01-27	2017-03-06	38	개발도상국 3개국 컨설팅용역 ○○○○ 출장	X	후속업무 처리 (국내중간보고,업무 출장)
42	2017-02-11	2017-02-16	5	○○○○○ 토지행정개선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관련 국외출장 계획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회수)·주의요구

제 목 직원 복무(지각, 조퇴)점검 및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직원의 출근, 결근, 지각 등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지각 및 조퇴는 연간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이 될 경우 연차휴가 1일로 산정한다. 다만, 지각의 정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2016년 직원의 복무관리를 확인하여 지각 및 조퇴의 연간 합산 누계시간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표 1] 2016년 지각 및 조퇴 연간 합산 누계 8시간 초과 현황

소속	사번	성명	지각조퇴 누계 합산시간	차감 일수	연차차감금액(원)	동의여부	비고
○○지역본부 ○○지사	970177	신○○	10시간33분	1	172,520	동의안함	소명불인정
○○지역본부 ○○지사	A20076	고○○	15시간48분	1	159,900	동의함	
○○지역본부 ○○○○처	A20095	이○○	17시간17분	2	328,190	동의함	
○○지역본부 ○○지사	940242	김○○	14시간8분	1	173,030	동의함	
○○○○지역본부 ○○지사	780362	정○○	16시간34분	2	471,000	동의함	
계		5명			1,304,640		

[표 2] 2016년 지각 및 조퇴 횟수 및 근태관리(근태리더기) 현황

소속	사번	성명	지각조퇴 횟수	소명내용	비고
○○○○지역본부 ○○지사	920117	정○○	190	소관청으로 바로 출근 및 근태등록 오류로 인한 퇴근 미처리	소명불인정
○○○○지역본부 ○○지사	870036	이○○	157	소관청으로 바로 출근 및 근태등록 오류로 인한 퇴근 미처리	소명불인정
○○○○지역본부 ○○지사	940046	곽○○	159	소관청으로 바로 출근 및 근태등록 오류로 인한 퇴근 미처리	소명불인정
○○○○지역본부 ○○지사	940207	전○○	134	소관청으로 바로 출근 및 근태등록 오류로 인한 퇴근 미처리	소명불인정
○○지역본부 ○○지사	970177	신○○	18	체육행사 참석 및 퇴근처리 누락	소명불인정
○○지역본부 ○○지사	A90046	박○○	11	출퇴근 정정신청 오기입력 및 퇴근 근태처리 소홀	소명불인정
○○○○지역본부 ○○지사	890144	심○○	6	유연근무제 해지 인지 못하여 근태처리 소홀	소명불인정
계		7명			

※ 2016년 ERP 근태관리(지각 및 조퇴)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 [표 1] 현황과 같이 2016년 지각 및 조퇴 직원의 연간 합산 누계시간이 8시간 초과한 5명에게 연차휴가 1일로 산정하지 않고 연차수당 1,304,640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표 2] 현황과 같이 2016년 지각, 조퇴 횟수 및 출근, 퇴근, 유연근무제 등 근태관리(근태리더기)를 소홀히 한 7명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원 복무(지각, 조퇴)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실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차수당 1,304,640원에 대하여 전액 환수조치 하겠으며, 직원 복무(지각, 조퇴)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 ① 관련 지역본부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차수당 1,304,640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직원 복무(지각, 조퇴, 출근, 퇴근, 유연근무제 등)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지각, 조퇴 횟수 및 출근, 퇴근, 유연근무제 등 근태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9호에 따라 “주의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정○○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이○○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곽○○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전○○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신○○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6급 박○○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4급 심○○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계약제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계약제 직원의 채용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를 고용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계약제직원관리지침」 제8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별지 제2호 서식¹⁴⁾에 의하며, 계약제 직원의 고용 시 근로계약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사장은 계약제 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¹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제 직원은 공사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계약제 직원의 채용 면접시험 채점 시 대상자에 대한 역량과 품격을 겸비한 인성을 최대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14) 별지 제2호 서식(면접시험 채점표)

- 일반사항: 1.자기소개서, 2.근무경력, 자격, 교육, 학력, 어학 등
- 담당직무: 1.전문지식과 직무수행 능력, 2.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조직회합과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 가능성, 4.청렴성, 도덕성 및 성실성, 5.사회봉사정신, 고객서비스마인드
- 면접위원 검토의견

15) 1.「인사규정」 제36조(직권면직)에 해당하는 경우

- 2.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사유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경우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 4. 법령 또는 사규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 5. 계약사업 또는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계약제 직원의 고용 시 고용계약 해지 사항 5개 항목을 근로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계약제 직원 채용 면접시험 채점표에 역량과 품격을 겸비한 인성을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의 내용이 “갑”은 “을”이 “계약직관리지침 제12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계약제 직원 당사자가 계약 해지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 결과 계약제 직원 고용 시 역량과 품격을 겸비한 인성 검증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 의견 ○○처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계약제직원관리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계약제 직원 고용 시 역량과 품격을 겸비한 인성 검증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고용계약 해지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제직원관리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직원 근무성적평정표 출근상황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규칙」 제5조 및 14조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하 “평정기간”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1년간)로 하며, 평정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평정하여야 하고, 업무형평상 필요할 경우에는 평정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무내용과 실적을 토대로 하여 그 능력, 업무태도, 근태상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 직원용, [별지 제2호서식] 연구직용, [별지 제7호서식] 교수직용 근무성적평정표에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한 후 배정점수를 평정 기입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원, 연구직, 교수직의 능력, 업무태도, 근태상황 등을 근무성적평정표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평정요소의 배정점수 평정 기입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직원용, 연구직용, 교수직용 근무성적평정표 별지 서식의 평정요소 중 출근상황 요소의 평정기준이 [표 1] 현황과 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표 1] 근무성적평정표(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7호 서식)

평정 요소	직원용	연구직용	교수직용
출 근 상 황	결근, 조퇴, 지각한 사실에 대한 평가? (전혀없음: 10점, 결근1회, 지각 조퇴 3회 이내: 6, 결근2회, 지 각조퇴 6회 이내: 3, 결근 3회, 지각조퇴 7회 이상: 1점)	결근, 조퇴, 지각한 사실에 대한 평가? (전혀없음: 5점, 가끔있음: 3점, 지각·조퇴 4회 이상: 1점)	결근, 조퇴, 지각한 사실에 대한 평가? (전혀없음: 5점, 가끔있음: 3점, 지각·조퇴 4회 이상: 1점)

※ 「근무성적평정규칙」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7호 서식 재구성

이와 같이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중 출근상황 평정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 의견 ○○처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근무성적평정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중 출근상황 평정기준을 형평성에 맞도록 「근무성적평정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공로연수비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퇴직일이 6개월 남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인사규정」 및 「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라 공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국제내부감사기준은 조직의 목표를 완수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이 취한 조치를 “통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을 저지하는” 예방통제와 “원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을 적정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탐지통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은 경영진이 목표가 완수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갖기 위한 통제절차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예방통제와 적발통제를 조합한 효율적인 통제절차를 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1. 예방통제 방안과 관련된 사항

공로연수자는 소속 부서에 공로연수비 지원을 신청하고 있으며 소속 부서는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공로연수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공로연수운영지침」 제5조는 공로연수비 지원범위를 [표] 현황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6조는 “개인연수지원 신청서”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각 회계단위별로 공로연수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공로연수비 지원범위

구 분		지 원 범 위
교육	자격취득 관련 교육	각종 자격취득에 필요한 학원 수강
	재취업 관련 교육	민간 기관(업체)의 특별연수
	어학습득 관련 교육	어학습득에 필요한 학원 수강

그러므로 위 공사에서는 공로연수자가 공로연수지원비를 신청한 경우 「공로연수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범위 및 지출증명 요건을 충족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부적절한 공로연수지원비 지급을 예방할 수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적발통제 방안과 관련된 사항

공사 ○○실은 2016년도 ○○운영계획 채수립(○○실-588: 2016. 2. 2.)을 통해 본부는 1년 주기로, 지사는 4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합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로연수자가 소속부서가 아닌 각 본부에 공로연수지원비를 신청하고 본부에서 직접 검토 후 지출한다면 매년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통해 집행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공로연수지원비 신청내역을 본부에서 검토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로연수지원비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공사에서는 각 본부에서 직접 공로연수지원비 신청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급을 승인하는 등 공로연수지원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를 효과적·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처장)은 공로연수지원비 승인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로 연수운영지침」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고요구

제 목 정부 경영지침(징계규정 등) 이행 소홀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 등을 제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제1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지침(이하“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경영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인사운영 원칙)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 및 소속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을 법령 및 정관·자체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2조(승진의 제한), 제15조(포상제한), 제16조(징계의 감경), 제17조(의원면직의 제한)에는 [표 1] 현황과 같이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한 승진 및 포상, 의원면직의 제한과 징계감경 금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의 관련 규정 내용 요약

조항	내용		
제12조(승진의 제한)	승진심사 제외	승진 제한	승진제한기간 가산(3개월)
	징계처분요구 중인 직원, 징계의결요구 중인 직원, 징계처분 진행 중인 직원	강등·정직 후 18개월, 감봉 후 12개월, 견책 후 6개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제15조(포상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재직 중 벌금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 또는 감사 중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6조(징계의 감경)	감경사유	감경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이상 공적,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 이상 공적, 기관장 표창 이상 공적, 인사위원회 별도 기준에 의한 공적	중복감경, 금품수수 등 징계 후 5년 미경과한 자,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제17조(의원면직의 제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감사 관련 기관에서 중징계 처분 요구 중인 때,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따라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승진, 포상,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 및 징계감경 금지 규정 등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20개 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90개)의 지침에 따른 내부규정 제정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2] 현황과 같이 승진의 제한, 포상제한, 징계감경 금지, 의원면직의 제한 규정이 일부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사도 [표 3]과 같이 승진 제한 및 포상제한이 지침내용 내부규정 반영률이 75%로 분석되어 기획재정부로부터(인재경영과-1659, 2016. 11. 3.)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되었다.

[표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침 항목별 미반영 명세 (2016. 5. 30. 기준)

(단위: 개)

지침내용			미반영 기관 수
승진의 제한	승진심사 제외	징계처분요구 중인 직원	38
		징계의결요구 중인 직원	29
		징계처분 중인 직원	10
	승진제한	강등·정직 후 18개월	6
		감봉 후 12개월	8
		견책 후 6개월	5
	승진제한기간 가산	금품·향응 수수	33
		공금 횡령·유용	34
		성폭력	46
		성희롱	50
		성매매	49
포상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3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71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29
	형사사건 기소 중인 사람		36
	재직 중 벌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51
	수사 중인 사람		39
	감사 중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46
징계감경 금지	중복감경		17
	금품수수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26
	성폭력범죄		21
	성희롱		33
	성매매		33
	음주운전		46
의원면직의 제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1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때		1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 중인 때		24
	인사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때		18

자료: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지침내용 내부규정 반영 기관별 현황 (2016년 5월말 기준)

(단위: %)

연번	기관 분류	기관명	승진 제한	포상 제한	징계감경 금지	의원면직 제한	반영률
71	준정부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	△	○	○	75.0

자료: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공사 내부규정을 확인한 결과 본사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표 4] 현황과 같이 지침이 내부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표 4] 지침내용 공사 내부규정 미반영 현황

지침내용			반영 여부
승진의 제한	승진심사 제외	징계처분요구 중인 직원	×
		징계의결요구 중인 직원	○
		징계처분 중인 직원	○
	승진제한	강등·정직 후 18개월	○
		감봉 후 12개월	○
		견책 후 6개월	○
	승진제한기간 가산	금품·향응 수수	○
		공금 횡령·유용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포상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
	형사사건 기소 중인 사람		○
	재직 중 벌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
	수사 중인 사람		×
	감사 중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그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정부 경영지침을 준용하지 않는 등 징계관련 규정 개정 업무 처리에 소홀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처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의 내용이 내부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정부 경영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관련자에 대한 승진 및 포상제한 등 관련 내용이 내부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고요구

제 목 징계 감경(불문경고)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에 따라 직원의 징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징계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제6항에 “인사위원회는 [표 1]과 같이 견책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될 경우 불문(경고)¹⁶⁾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제9항에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이 경우 일반 문책성 경고(훈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정기종합감사에서 징계감경에 따른 ‘불문(경고)’와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른 경고(훈계)를 구분·운영하여 징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가 있어 개선된 사항이다.

1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 3532 판결문에 따르면 ‘불문(경고)’의 취지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견책을 감경할 때 이를 불문에 붙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그 대신 경고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징계(견책)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에 따른 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경고(훈계)와 구분됨

[표 1]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정	제8조제6항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 한국국토정보공사 「징계규칙」 [별표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1호(2016.12.22.) 제12장 징계 I.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를 보면 불문(경고)의 말소제한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부 경영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포상제한)에도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사 내부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표 2] 현황과 같이 문책(경고·훈계)의 경우 처분효력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견책 수준인 불문(경고)의 경우 처분효력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공사의 현재 규정으로 불문(경고) 처분은 아무런 처분 효력이 없는 실정이다.

[표 2] “불문(경고)와 문책(경고·훈계) 처분 비교”

구분	불문(경고)	문책(경고·훈계)
처분근거	「징계규칙」 제8조 제6항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
인사기록카드등재 (말소제한)	등재 <u>내부규정 없음.</u>	등재 (1년)
감점평정	<u>내부규정 없음.</u>	매회 0.2점 (처분기록 말소 시 까지)
표창제한	<u>내부규정 없음.</u>	1년

※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정부 경영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부규정에 반영하지 않아 정부 경영지침을 준용하지 않았고, 또한 2016년 국토

교통부 정기종합감사 처분사항(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및 징계 감경 부적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개정 업무처리에 소홀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처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후일 불문(경고) 처분효력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징계 감경에 따른 불문(경고)의 처분효력이 실효성 있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유연근무제(시간제근무 및 원격근무) 운영지침 개선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유연근무제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를 지향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자율적·창의적인 조직문화 달성을 목적으로 「유연근무제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 ○○처는 유연근무제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시간제근무에 관한 사항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2조 제1항에 ‘시간제근무’라 함은 “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한 직원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보다는 짧은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5조에는 ‘시간제근무’에 대하여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근무시간은 주당 15~30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며, 근무하는 날일 경우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본사 ○○처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유연근무시스템 매뉴얼¹⁷⁾에는

17)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선사항 알람: ○○처-3479(2015. 6. 18.), ○○처-5838(2016. 10. 18.)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을 활용하여 ‘시간제근무’를 신청할 때 근무하는 날의 1일 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입력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감사일 현재 ‘시간제근무’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같은 지침 제5조 제3항과 관련하여 ‘별표 2’의 시간제근무 유형에는 1일 8시간 근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관련지침과 업무매뉴얼의 업무처리 내용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간제근무”에 대한 근무하는 날의 1일 최장 근무시간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제근무’에 대한 용어 정의, 운영 매뉴얼 설명자료, ERP시스템 등의 연계성을 확보한 관련지침 및 업무매뉴얼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원격근무에 관한 사항

‘원격근무’라 함은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 또는 특정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21조 부터 제23조에 ‘원격근무’는 지침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격근무 신청시기는 실시일 7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해제시기는 해제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무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으로 원격근무 유형은 다음 [표] 현황과 같다.

[표] 원격근무 유형(제21조 제2항 관련)

유형	근무시간 형태
주1일 형태	주1일(월) 원격근무, 주4일(화~금)은 사무실 근무 등
주2일 형태	주2일(월,화) 원격근무, 주3일(수~금)은 사무실 근무 등
주3일 형태	주3일(월~수) 원격근무, 주2일(목~금)은 사무실 근무 등

그런데도 감사일 현재 ‘원격근무’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유연근무 매뉴얼에는 근무유형을 최소 주1일에서 최장 주5일까지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게 설명되어 있는 등 관련지침과 배치되는 업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격근무’는 정기적이 아닌 일시적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위한 유연근무 형태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 업무환경 및 제도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원격근무’의 근무 유형, 근무기간, 승인절차, 신청 및 해제시기 등 관련지침 및 업무매뉴얼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과 관련한 ‘시간제근무’ 및 ‘원격근무’ 운영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연근무제 관련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사 및 부설기관 2개와 지역본부 12개를 두고 있으며 각 기관의 ○○처, ○○○○실, ○○○○실, ○○○○처에서 계약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의계약 사전 협의회 운영(안) [○○팀-3884, 2010.10.27.]”(이하 “운영(안)”이라 한다.)을 통해 수의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위 운영(안)은 발주부서의 방침결재 전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의 계약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재무처에 요청할 것을 본사 내 각 부서에 시달하였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사 ○○○○실장으로, ○○부서장 및 ○○실 직원·발주부서장·계약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정하였다.

한편 위 공사에서는 2015. 7. 29.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며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본사 뿐 아니라 각 부설기관 및 지역본부에서도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있는 부설기관 및 지역본부에서 본사 ○○○○실장 및

○○부장 등으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매번 구성하는 것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설기관 및 지역본부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처장)은 계약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본부 및 부설기관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의계약사유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주택임차대부금 대여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주택임차금 대부규칙」 및 「주택임차금 대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직원이 인사발령등으로 생활근거지(가족거주지)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주택임차금을 대부하고 있다.

「주택임차금 대부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생활근거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편도 90분 이상 소요되는 직원을 대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무지를 기준으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이상 지역은 4천만 원을, 기타지역은 3천만 원을 대부한도”로 되어 있고

「주택임차금 대부규칙」 제9조 제3항에서는 “상환지연자 및 부당대부자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이 도청소재지에서 기타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경우 대부한도가 자연감소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금은 반환해야 한다.

[표] 주택임차금 부당대부자 현황

(금액단위: 원)

소 속	직 성명	부당 대부금액	주택임차금 부당 대부기간	당좌대출 이자율	사 유	지연이자	근무지 이동일자
○○지사	국토정보직 7급 김○○	10,000,000	2016.04.26.~ 2017.03.08.(317일)	4.6%	대부한도를 10,000,000원 초과	399,500	2016.2.26.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사에 근무하는 국토정보직 7급 김○○이 [표] 현황과 같이 ○○지사에서 당진지사로 발령 받아 대부한도가 감소하여 임차금 1천만 원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감사를 통해 적발되기 전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사에 근무하는 국토정보직 7급 김○○은 초과 대부 받은 임차금 1천만 원과 상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399,5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주택임차금 대부규칙」에 따라 ○○지사 국토정보직 7급 김○○에게 주택임차금 1천만 원과 지연이자 399,5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